

共產圈과 分斷國의 正統性에 關한 研究

1975. 9.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9.

研究機關：陸軍士官學校 國防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崔 昌 潤

研究委員：姜 光 植

(一) 研究의 趣旨 및 重点

分断國問題는 2次大戰 以後의 獨特한 國際政治的 狀況에서 惹起된 새로운 國際問題의 하나이다. 2次大戰 以後, 美蘇를 頂点으로 하여 전개되기 시작한 東西兩陣營간의 冷戰的 對立狀態와 그리고 그 속에서 빚어진 強大國들간의 勢力均衡政策이 分断國問題의 性格을 特徵지워 왔다. 그리하여 分断國問題는 分断된 當事者들간의 合意的 要素만으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복잡한 性格을 내포한다. 分断國問題는 이와같은 고도의 政治的 性格으로 因하여 法的 觀点으로는 本質적으로 포괄되기 어려운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볼 때, 그 歷史가 이미 四半世紀를 超過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거기에 대한 法理論體系가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은 오히려 當연할 지도 모른다.

애당초 分断의 主要 要因이 되었던 東西間의 冷戰的 對立은 오늘날의 國際情勢에서 뚜렷한 變化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60年代末頃에 具體的 樣相을 드러내기 始作한 東西間의 緊張緩和 趨勢는 비록 그것이 強大國간의 關係調整에 一次的인 適用性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形式에 의해서건 分断國問題에 대해서도 變化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事實上 相當한 變化가 이미 표면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分断된 당사자들간에 있어서 4半世紀동안 누적되어온 그들간의 對立的 要因이 쉽게 解消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동시에

統一을 원하는 民族的 要求가 그底流을 支配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民族的 要求와 關聯하여, 특히 70年代에 들어서면서 그를 分斷된 당사자들간에 발전적인 努力이 경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볼때, 보다 두드러진 현상은, 強大國들간의 그러한 緊張緩和 趨勢를 그들간의 現實적인 對立關係에 유리하게 利用하려는 데 안간힘을 다하는 것으로 代表된다.. 특히 北韓의 金日成체제는 그동안의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저들의 터무니없는 單一正統性을 客觀化해보려고 온갖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어쨌든 分斷國들은, 國際情勢의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여, 종래에는 별로 關心을 기울이지 않았던 法的 觀點에 依賴해서 까지 그들의 政策的 要求를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努力을 集中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은, 法理論體系가 그것이 안고 있는 現實政治世界上的 限界性에도 不拘하고, 合理性과 說得力을 갖추기만 하면 現實을 變更시키는 하나의 有力한 實踐的 要素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重要的 命題에 관심이 환기된 結果로서 理解될 수도 있다.

大韓民國은 解放後 20餘年동안 "韓半島 唯一合法政府"로서의 UN決議에 依支하여 安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國際情勢의 變化에 직면해서는, 8.15宣言 및 6.23宣言等を 通하여 比較的 積極적인 政策的 이니시야티브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하는 確固한 法理論體系를 提示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形편에 있음을 솔직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 UN을 중심적 배경으로하는 國際社會의 一角에서 多數의 壓力을 행사하고 있는 非同盟國諸國은 分斷國의 개별적 事정에 어긋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問題의 方向을 왜곡시킬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情勢를 감안할 때, 우리 의 正當한 立場과 要求를 확고한 法理論體系로 代辯할 必要性은 強調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分斷國問題에 관한 기존의 法理論을 檢討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分斷에 관련된 諸般 要因이 내포하고 있는 法的 性格을 分析. 綜合함으로써 問題의 段階와 性格에 적합한 法的 命題를 提示할 수 있다면, 그것은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現實의 政策을 더욱 有效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本研究은 이와같은 맥락의 問題意識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사항에 분석의 重點을 기울임으로써 貢獻에 보태고자 한다.

(1) 分斷國問題에 關聯되는 「社會主義 國際法」의 諸理論 檢討

分斷國問題에서, 예외가 없는 共通의 要素의 하나는 그 一方이 共產主義體制를 포방하고 있는 점이다. 이점은 分斷의 核心的 原因인 東西冷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물론 分斷된 當事者뿐 아니라 分斷한 國際勢力도 포함된다. 이러한 基本的 要素를 고려할 때, 形式 論理的 立場에서만 보더라도, 분단의 직접 및 간접적 當事者의 一方인 共產陣營側의 法的 主張을 전혀 무시한 法理論의 모색은 現實적인 實効성을 欠如하기 마련이다.

더우기 오늘날 強大國間의 緊張緩和趨勢가 蘇聯을 中心으로한 共產主義體制의 이론바 「平和共存」政策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共存的 競爭關係」의 展開가 현실적으로 分斷國問題의 基本構造 變更의 具體的 면모를 規定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등을 감안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法理論에 대한 分析. 檢討의 必要性은 더욱 緊要하지 않을 수 없다. 本研究에서는 蘇聯을 中心으로한 「社會主義國際法」의 特徵的 性格을, 특히 흐루시초프 以後의 平和共存政策에 關聯된 法理論의 變遷過程에 비추어 檢討해보고 그것이 分斷國問題에 대하여 갖는 適法性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2) 分斷國의 法的 地位에 관한 諸理論의 整理

分斷國의 法的 地位에 관한 기존의 研究를 一覽해보면, 예컨대 東西獨問題의 경우, 대체로 2가지의 相異한 目的이 그 底流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再統一된 單一國家를 指向하는 理論的 모델로서 再獨學者들의 理論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分斷固定을 許容하는 理論的 모델인데 거기에는 東獨 및 仏蘭西의 學者들의 立場이 포함되고 있다. 어떤 理論이든간에 分斷國問題가 內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法的 性格을 把握하는 데는 좋은 참고가 된다. 특히 브란트의 東方政策의 法的 根柢가 되고 있는 마틴·크리일레教授의 部分國家 法理論은 한국적 處지의 法理論化에 重要한 準拠가 될 것이다.

(3) 東西獨問題와 南北韓問題의 法的 特性 比較

東西獨問題와 南北韓問題는 전형적인 分斷國問題로서 重要的 屬性을 共有한다. 그러나 이를 두 分斷國問題는 基本的인 國際的 背景조건을 달리하는 만큼 統一을 지향한 政策的 要素의 具體的 전개과정을 달리한다. 따라서 獨逸問題는 分斷國問題 解決의 좋은 先例로서 取扱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을 그대로 한국문제 解決에 適用할 수 없는 特性을 갖는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具體的인 差異點을 檢討해보기 위하여, 먼저 Hallstein 원칙 및 不承認政策 變轉過程 및 거기에 關聯된 主要 法的 特性의 차이를 比較해보고 나아가서 獨逸의 方式이 韓國的 適用上에 惹起되는 問題點을 포괄적으로 대조 검토해보고자 한다.

(4) 國際法上的 正統性에 立脚한 韓國의 統一政策의 法的 根拠 및 命題 摸索

民族史的 正統性의 立場에서 韓國은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부단히 努力을 傾注하여 왔다. UN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普遍的 "唯一合法性"을 가지고 있는 韓國은 國際平和와 民族의 再結合을 위하여 周邊情勢의 變化에 積極的 姿勢를 取하였다.

8.15宣言, 6.23宣言 및 南北韓不可侵協定 提議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UN을 비롯한 國際機構의 "表決場"에서 "多數의 壓力"을 행사하고 있는 非同盟國諸國은 分斷國의 個別的 形便에

어둡기 때문에 歪曲된 方向으로 分断国問題의 向方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韓國의 正當한 統一政策을 非同盟國들이 納得하도록 合理的이고 說得力있는 法理論體系를 提示할 必要가 있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必要性을 감안하여, 먼저 韓國의 統一政策이 내포하고 있는 法的 根拠를 憲法 및 國際法的 側面에서 檢討하고, 나아가서 正當한 우리의 統一政策을 明白히 代辯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明確한 法的 命題를, 하나의 試案으로서 圖出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本研究에서 附錄으로 다루고자 하는 問題는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正統性問題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에서 그 準拠를 찾는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正統性問題를 보기 위하여, 그 具體的 的 論拠, 거기에 대한 中共·蘇聯간의 論争点, 그리고 그들의 諸理論과 實際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北韓路線이 차지하는 地位를 檢討해 보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北韓은 共產陣營 자체내에서도 異端者로 비판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단자로서의 北韓의 처지에 대한 具體的 根拠를 밝히는 일이 本研究 부록의 一次的 目的이다.

연구
출
배출

(二) 豫 備 的 考 察

1. 現代國際法秩序의 構造的 特質

國際社會의 모든 構成員을 구속할 것이 요구되는 一般國際法은, 오늘날의 國際政治의 現實에 비추어 볼 때, 그 領域과 實効性의 面에서 極히 制限되어 있다. 國際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國家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文化的 및 歷史的 遺産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經濟發展段階 역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各國의 法的 基盤은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現代 國際法秩序의 異質性을 더욱 심화시켜온 要因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對立 現象이다. 2次大戰 終戰期를 전후로 하여 대두되기 始作한 美. 蘇를 兩極으로 하는 東西冷戰의 激化는 世界의 政治秩序를 兩分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하여 國際法秩序의 基本的 배경과 法的 要求까지도 兩分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원래 國際社會는 國內社會에 比하여 法秩序의 基盤이 原始的이기 때문에 그러한 社會를 背景으로 하는 國際法은 個別國家의 合意에 의해서만 成立되고 또 合意한 國家만을 구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는 合意라 하더라도 個別國家의 立場에서 받아들이는 그것은 自國의 方式에 의한 것이고 自國의 立場에 立脚된 콘센서스를 유도 또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說得方式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現實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國際法이란 “一般的”이라기 보다는 “特殊的”인 面에서 그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콜럼비아大學의 Oliver J. Lissitzyn 教授는 現代의 國際法秩序에 對하여 妥當한 見解를 披
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Lissitzyn 教授는 오늘날 世
界에서 通行되고 있는 國際法規範을, 相異한 法的 要求의 性格에
따라서, 三大圈域으로 区分하여 考察하고 있다.

첫째, 英·美를 中心으로 하는 傳統的 國際法

둘째, 蘇聯을 中心으로 하는 共產主義陣營의 이론바 社會主義
國際法

셋째, 開發途上 國家들의 새로운 法的 主張을 대변하는 第三世界
國際法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보는 觀點은 다르지만, 이와 類似하게 國際法三分論을 提
起한 學者로서, 蘇聯의 E·A·Korovin을 들 수 있다. 즉 Kor-
ovin은 1951년 Nauka에서 나온 國際法教科書에서 國際法을 三
分하여 (1) 소멸할 運命에 있는 資本主義國際法 (2) 장래가 約束되
는 社會主義國際法 (3) 상반되는 兩体制의 一時的 共存으로서 決定
되는 過渡期國際法등이 있다는 理論을 展開하였다. (參照)

註 1) Oliver J. Lissitzyn, "International Law in a Divided
World,"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 542, 1963 및
International Law : Today and Tomorrow,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1965.

※ Bernard Dutoit, Coexistence et Droit International
à La Lumière de La Doctrine Soviétique, 1966, pp. 44-
45)

주지하듯이, 現代國際法の 根幹은 近代 유럽社會에서 出發한 近代的 國際法이다. 유럽勢力的 世界的 팽창에 따라 非유럽사회·國家에도 通用됨에 이르자 共同的 合意가 그 법의 基礎이 되었다. 서양諸國은 國際法 當初의 基礎가 된 根本信念에 關係없는 諸國에 대하여 복종을 要求하여 서양의 정복자와 其他의 피정복자간에는 多數의 條約이 締結되고 이러한 條約締結의 方式을 통하여 유럽식의 外交와 戰爭에 관한 慣行이 紹介되었고 또 자주 이것이 照從됨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럽의 傳統을 지닌 條約과 관습은 文化를 달리한 國民간에 일단 紛爭이 發生한 境遇에는 秩序의 基礎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衝突의 根源이 되는 수가 많았다. 이와 같이 傳統的인 유럽國際法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非유럽世界에 對한 不平等의 要素로 因하여 重大한 挑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중의 하나는 蘇聯을 中心으로한 共產主義國家들의 挑戰이며 다른 하나는 新生諸國의 새로운 法的 要求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共產主義國家들의 傳統的 國際法에 對한 공격적 姿勢는, 그들이 主張하고 있는 部分的인 法論理的 妥當性에도 不拘하고, 그 自体가 려다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特히 蘇聯을 中心으로한 '社會主義國際法' 理論에서는 자주 新生國들의 法的 要求를, 고무하지만 그것은 유럽적 法秩序와의 對決을 爲한 利用에 지나지 않는 境遇가 많다. 1968년의 捷코사태 以後로 더욱 強調되고 있는 蘇聯의 이른바 社會主義 國際法理論을 보면, 共產主義 強大國의 國際法的 要求 역시 近代的 유럽強國의 不平等의 國際法과 마찬가지로의

性格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그리고 本研究의 主題인 分断国問題에 關한 한, 英·美中心의 傳統的 國際法體系나 蘇聯中心의 社會主義 國際法體系는 모두 民族自決主義原則을 國際法의 主要 原則으로 認定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實際的 態度는 단순한 適法性原則으로서 政治的 宣傳에 利用하고 있을 뿐이다.

2. 平和共存原則과 社會主義國際法理論

앞에서 言及하였듯이 共產主義 國家들의 國際法理論은, 유럽적 傳統國際法을 根幹으로한 現代의 國際法體系를 本質적으로 分열시킨 同期 및 機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對決的인 兩大國際法體系는 同時에 分断国問題를 惹起시킨 美蘇間의 冷戰的 對決과 密着된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分断国問題의 國際法的 性格을 檢討하는데 있어서는 共產主義國家, 特히 蘇聯의 國際法理論을 살펴보기 않을 수 없다.

註 2) S. Kovalev, Sovereignty and the Internationalist Obligations of Socialist Countries, in Year 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Hoover Institution Press, 1969, pp.1061-1063.

※ 金容九, "社會主義國際法과 蘇聯 國際法理論,"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論文集, 第二号, 1975, pp.63-64.

더우기 蘇聯의 國際法理論에서 보면, 体制가 다른 國家들간의 平和共存의 原則은 社會主義國家들간의 國際主義의 原則과 함께 二大 基本理念으로서 主張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分斷國問題의 現實的 性格의 調整作業에도 必要하게 適用될 수 있는 法的 根拠를 내포 하고 있다.

1) 法原則으로서 平和共存原則의 內容

蘇聯의 國際法學者들은 一般的으로 平和共存 概念의 기원을 Lenin의 思想에서 찾고, 소비에트 政權 樹立 以來 그들의 확고한 外交政策原則이었으며, 이 원칙이 1954년 Pancha Shila 條約 以來 國際法の 基本原則으로 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³⁾

이와같이 平和共存原則이 國際法の 基本原則으로 됨으로써 國際法은 새로운 發展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國際法の 基本原則은 本質적으로 變化하였다. 많은 反動的 原則은 소멸되고 새로운 重要한 進歩的 原則이 發生하였다. 舊來의 民主的인 國際法原則은 一層 發展하였다." ⁴⁾

새로운 重要한 原則으로서는 侵略禁止原則, 武力使用 및 威脅의 禁止原則, 紛争의 平和的 解決原則, 民族自決原則, 狹意의 平和共存原

註3) E. McWhinney, " Peaceful Coexistence and Soviet - Western International Law, " AJIL, Vd. 59, No.1, 1965, p.2

註4) Nauka 國際法, 1967, p.109.

則 등을 열거하고 定立段階에 있는 새로운 原則으로서 軍縮原則을 들며 旧來의 原則으로서 一層 發展을 본 것으로는 國家主權尊重原則, 國內事項不干涉原則, 國家平等原則, Pacta sunt servanda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소멸된 反動原則으로서는 勢力範圍, 領事裁判制度 不平等條約, 干涉權등을 열거하고 있다.⁵⁾

그런데 이러한 平和共存原則의 具體的 表現은 兩體制에 속하는 國家들간의 條約으로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미 1951년판의 Nauka 國際法教科書에서 Korovin은 條約의 重要性을 相異한 社會經濟體制를 갖고 있는 國家間的 共存과 關聯하여 說明하였고, 蘇聯 國際法學者中 條約法專門家인 I.I. Lukashuk 역시 一般國際法에 있어서 條約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그러면 平和共存의 具體的 法的 表現으로서의 條約의 本質은 무엇인가? V.M. Shurshalov는 "國際條約 効用性的 基礎" (1957)에서, 첫째 相異한 社會經濟體制間에 客觀적으로 存在하는 關係의 真正한 上部構造이자 法形式이며 이를 條約의 遵守와 性格은 社會主義陣營과 資本主義陣

註5) Ibid., pp.109-113. G.I. Tunkin은 새로운 原則으로서 不可侵原則,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民族自決原則, 狹義의 平和共存原則, 軍縮原則, 戰爭宣傳禁止原則을 들고, 旧國際法原則으로서 發展, 強化된 것으로서 國家主權尊重, 內政不干涉, 權利平等, Pacta sunt servanda 등을 든다.

G.I. Tunkin, "La guerre froide et Le droit International," Comprendre No.25, 1962, pp.34-63.

菅 國家間의 共存으로서 決定" 되는 것이고 둘째, " 적어도 締約 當事國의 一方이 이 條約의 모든 規定을 강력히 遵守" 하고 있기 때문에 誠實히 遵守되며, 셋째, " 제국주의적 條約" 일 수 없다는 것은 蘇聯이 그조약당사국이란 것이 그런 보장인 것" 인데 왜냐하면 蘇聯은 " 不平等 條約이나 힘에 依한 條約" 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그런 條約은 相互利益原則에 立脚한 고로 " 따라서 이들 條約이 包含하는 法規範의 履行은 모든 條約當事國에 有益하다" 는 것등이다.⁶⁾

다음으로 平和共存原則은 " 主權國家의 並存이란 特定한 歷史發展 段階" 에 있어서의 國際法原則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平和共存法으로서의 國際法の 基本的 主体는 당연히 國家만을 認定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階級の 發生으로 國家와 法이 나온다는 社會主義法 理論에서 나온다. 階級發生 以前의 社會는 國家도 法도, 따라서 國際法도 存在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國家發生 以後의 國際法은 노예시대의 國際法, 封建社會의 國際法, 資本主義時代의 國際法, 帝國主義時代의 國際法, 그리고 平和共存時代의 國際法으로 發展하였다는 것이다.

註 6) J.F. Triska & R.M. Slusser, The Theory, Law and Policy of Soviet Treaties, (1962), p.224 및 金容九, " 平和共存原則과 蘇聯國際法理論",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論文集, 創刊號, (1973), p.103에서 再引

그런데 國家가 消滅하고 共產主義社會가 도래하면 國際法도 消滅하게 된다는 것이다. 平和共存 原則은 이러한 歷史發展 段階의 現段階에 있어서의 國際法の 基本原則이라는 것이다.⁷⁾

위에서 考察한 平和共存原則은 兩體制間의 法原則이다. 그러면 社會主義國家와 發展途上 國家間에도 이러한 平和共存原則만으로서 규율되느냐하는 問題가 나온다. 이問題에 대하여 Korovin은 "蘇聯과 그밖의 社會主義國家들은 貿易利益이란 考慮에서가 아니고 人類의 連帶意識에 의한 정신으로 指導되어 이들 國家들을 援助하고 그들과의 貿易 및 其他의 經濟關係를 最高度로 發展시키는 것을 義務로서 看做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에 對한 私心없는 援助를 提供함으로써 蘇聯은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의 高度의 諸原則에 합치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絶對적인 互惠性이 있을 수 없는 만큼 蘇聯의 援助를 받는 國家는…… 그 自体의 社會構造(資本主義的)가 배제하는 한 蘇聯에 對하여 같은 原則으로 支配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蘇聯學者들의 初期見解인 對後進國 푸로레타리의 國際主義原則 以外에 私心없는 經濟援助原則을 添加하고 있다.⁸⁾

註 7) G.I. Tunkin, op.cit., pp.145 ff. Nauka 國際法(1967), pp.33 ff. Z.M. Chenilovsky, "Contemporary Views in the USSR on the Origin and Role of the Stat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UNESCO) Vol.22, No.3, 1970, pp.459 ff.

註 8) Korovin, "La Charte des Nations Unies et la Coexistence Pacifique," in <1'U.S.S.R., droit, économie, sociologie, politique, culture> (1964), T.II, p.515

그런데 Tunkin 은 "平和共存의 实例로서 社会主义国과…… 新生 諸国과의 關係를 들 수 있다"고 하여 그간에 平和共存原則만이 支配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繼續하여 "이들 關係는…… 眞正한 友愛와 相互尊重, 政治的, 軍事的 條件을 賦与하려는 하등의 시도가 없는 經濟的 및 技術的 援助의 供与로서 特徵지워진다."고 하여 그들 間에는 平和共存原則이 보다 더 民主的으로 適用되는 形態와 그리고 經濟援助原則이 添加된다고 論하고 있다.⁹⁾

이問題에 대한 1967년의 Nauka 國際法の 理論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거기에서는 "現代 國際法에 있어서는 國家의 發展水準 不平等性의 淸산을 促進하는 規範과 原則이 存在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原則이란 國際法的, 經濟的 및 科學技術的 關係의 當事者인 國家의 平等과 相互利益의 原則인 것이다. 發展途上國家의 發展水準에 있어서 不平等 淸算의 主要 手段으로서 이들 諸國에 대한 援助의 供与는 國際法の 새로운 規範과 制度를 發生시키는데 이르렀다. 이들의 規範 및 制度를 實際에 適用하는 것은 植民地主義 및 新植民地主義의 武器로서 援助를 利用하려는 帝國主義國家들의 시도에 대한 鬭爭과 密接히 결부되어 있다"고 展開하고 있다.¹⁰⁾

註9) G.I. Tunkin, op.cit., p.23.

註10) Dutoit, op. cit., p.149

요컨대, 社會主義 國際法은 資本主義諸國의 後進國에 對한 援助가 國際法 위반이며 社會主義國의 援助만이 國家의 平等과 相互利益이라는 國際法原則을 強化시키는 것으로서, 後進國에 對한 社會主義國家의 經濟援助原則을 國際法原則으로서 說得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類型의 國際關係"로서의 社會主義國家들간의 關係를 규율한다는 이른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에 對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社會主義國際法은 特히 1959 ~ 60년부터 強調되기 始作하였다.¹¹⁾

社會主義國際法の 理論에 依하면, 그것은 一般國際法の 基本原則과 兩立될 뿐 아니라 그들 諸原則을 強化하고 있지만 兩者는 本質的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첫째의 특질은 社會主義國際法の 眞正한 人民的 性格, 깊은 人民的 本質이며, 둘째의 重要한 性質은 이法規範에 포함되어 있는 階級的 意思의 統一性"이며 法規模의 確保에 있어서도 一般國際法에서는 強制와 같은 要素가 本質的 역할을 하는데 반하여 社會主義國際法에서는 一國이 他國에 對하여 武力을 使用한다는 前提는 消滅되었고 따라서 平和共存原則의 하나인 不可侵原則의 適用은 存在理由가 없다는 것이다.¹²⁾

註 11) 社會主義國際法問題에 對한 歷史 및 상세한 法的 內容에 關하여는

參照→金容九, 前揭論文, (1973), pp.106-109.

註 12) Nauka 國際法, (1967), p.124 및 Tunkin, op.cit., p.245

그리하여 社會主義體制의 諸國間에 있어서는 平和共存原則이 보다 進歩的인 基礎 즉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에 依해 대치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兩者는 물론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지만 社會主義國際法의 「諸原則의 새로운 性格은 一般國際法의 이와 대응되는 原則들의 旧性格을 否定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平和共存原則으로서의 主權尊重原則, 內政不干渉원칙 등이, 社會主義國家關係에 適用될 境遇에는, 확연히 區別되는데 그것은 「그 原則들의 民主的 內容이 完全히 구현될 뿐 아니라 一般 民主主義原則의 範圍를 超越하는 特殊한 性格」으로 인한 것이고 그런 原則이 社會主義國家間에 適用될 때, 「새로운 精神」에 따라 解釈되고 適用되는 特殊한 關係가 成立된다는 것이다.¹³⁾

여기까지 考察하는 過程에서 우리는 蘇聯을 中心으로하는 共產主義國家의 法的 主張이 대체로 3가지로 区分하여 생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주체제를 달리하는 國家들간의 「과도거적」인 平和共存의 國際法, 資本主義的 先進國으로 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開發途上國家와 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규율하는 特殊한 國際法, 그리고 社會主義國家들간의 關係를 규율하는 이른바 社會主義國際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法의 主張은, 特히 蘇聯의 境遇, 自國의 特殊한 政治的 立場을 대변하기 위한 法原則의 變型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깨우칠 수 있다.

註 13) Tunkin, op.cit., pp.237-238

그러나 일단提起된 法原則은 그 國家의 利益도모에 작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그것을提起한 國家를 구속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오늘의 國際情勢에 대한 共產側의 法的 主張의 根拠가 되고 있는 "平和共存原則"의 類型別 諸理念을 알고 거기에 비추어 우리의 對共產國接觸의 政策的 必要에 充當해야 共產國接觸의 政策的 必要에 充當해야 할 것이다.

3. 國家의 正統性에 關한 國際法上의 諸原則

國際社會속에서 權利와 義務를 수행할 수 있는 法的 主体로서 國家의 地位를 說明하는 가장 代表的인 理論은 承認理論이다. 그러나 이承認理論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國家承認의 制度는, 現實的 國際社會의 特殊한 構造로 인하여, 허다한 問題點을 안고 있다. 순전히 理論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承認制度는 嚴格한 法的 要件에 依拠하는 法律制度라고 할 수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法的 制度라기보다 政治制度에 가까운 것이다.¹⁴⁾

國家承認은 사실상 두개의 側面을 가지는데 客觀的으로는 國際法 主体로서의 國家의 存在를 인정하는 것이고 主觀的으로는 新國成立의 諸條件이 承認國의 權益에 背馳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註 14) 李漢基, 國際法學(上), 博英社, 1965, p.139

國家承認이 實際로 政治的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第二의 側面이며 이런은 또한 承認國의 恣意的인 自由裁量에 속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承認理論은 國際法의 性質 및 基盤에 대한 學者의 理論的 信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나아가서 그 實際는 各國의 國家利益에 立脚된 政治的 考慮의 所産으로서 一義的인 아닌 特質을 갖는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하였듯이 그러한 承認制度가 아무런 法的 要件도 없이 임의로 濫용되는 것은 아니다. 承認制度도 그것이 國際法上의 有력한 하나의 制度인 한 通說로서 慣行되는 法的 基準을 갖는다. 예컨대 承認의 要件, 承認의 方法, 承認의 效果, 本承認國의 法的 地位등 여러가지 法的 內容을 내포한다.¹⁵⁾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具體的 內容에 대한 個別的 소개의 必要性이 없다고 여겨 지므로, 여기에서는 그러한 國家承認理論들이 問題點으로 내포하고 있는 法的인 主要原則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承認主義와 不承認主義> : 國家의 承認에 관한 問題가, 앞에서 보았듯이, 기존國家의 完全한 自由裁量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惹起되는 國際法上의 合法行爲 또는 不法行爲의 性格은 어떤 것인가?

註 15) 具體的인 通說의 內容에 관해서는 參照 → 李漢基, 上揭書, pp.142-154

이問題에 관하여는 대체로 2가지 基本的인 立場이 있다. 承認主義와 不承認主義가 그것이다. 前者의 立場에 의하면, 承認을 받을 수 있는 國家의 承認資格을 임의로 부인하는 것은 主權國家의 裁量權의 濫用으로서 그行爲는 國際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G. Dahm 教授는 이問題에 대하여, " 國權의 實効性에 관한 決定이 自由裁量에 달려 있는 만큼 거기에 恣意는 금지된다.

國家들은 그들의 자유재량을 濫用해서는 안되며, 承認에 대한 決定을 政治的 嫌박수단이나 他國의 內政干涉手段으로서 使用해서는 안되며, 承認을 承認에 관한 決定과 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는 條件들에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고 하여 承認에 관한 主權國家의 裁量權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承認主義理論과 대조적인 것으로는 不承認主義가 있다. 國際法上的 不承認主義는 承認資格을 갖추지 못한 國家에 대한 繼統的인 承認拒否가 오히려 合法的이라는 立場이다. 不承認主義는 이른바 " 스티븐스·독트린" 과 그리고 國際法的 武力使用禁止原則에 反하는 方法으로 惹起된 모든 事態를 承認하지 않는다는 1932년

註 16) 南基煥, " 分斷韓國의 國際法的 性格과 韓民族의 '統一問題," 平和統一研究所, 統一政策, 第一卷, 第二号, 1975, p.79에서 再引 (G. Dahm, Völkerrecht, Bd. I, Stuttgart, 1958, SS. 137-138)

3월 11일의 國際聯盟 總會決議에서 그 典型的인 根拠를 찾는다.¹⁷⁾
요컨대 不承認主義는 國際法上 適法性의 原則에 모순되는 行爲,
내지는 國際法規定의 침해로 成立된 事態에 대한 不承認이 國際法
秩序의 회복을 위한 正當한 強制的 制裁手段이 된다는 法的 主張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法的 主張을 國家의 法的
正統性 問題에 適用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命題를 成立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즉 國際法的 適法性의 原則에 反하는 方法에 의해서
成立되고 存続되는 國家에 대하여 一主權國家가 그 國家에 대한 國
際法上의 承認을 계속 거부하는 行爲는 合法的이다.

이와 같은 不承認主義의 法的 命題에 비추어 볼 때, 大韓民國이
侵略主義的인 北韓에 대하여 國際法上 承認을 繼續 거부하고 나아
가서 第三國이 北韓을 承認하는 일을 거부해온 사실은 國際法上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添加하여 말할 수 있는 重大한
事實은, UN으로 부터 承認을 받은 韓國이 北韓에 대하여 國際法
上의 基本原則인 相互不可侵을 約束하는 前提下에 國際法上으로 承
認할 용의가 있음을 提案한 것인데, 그것은 韓國政府가 國際情勢의
變動에 따라 國際法上의 "事實變更의 原則 (Rebus sic stantibus)"에 따른 政策的 措置로서, 無責任한 不承認主義를 採択하고

註 17) 이와 같은 不承認主義의 具體的인 法的 根拠에 대하여는
參照→ Ti-Chiang Chen, The International Law of Re-
cognition, (esp., chapter 7 : " The Doctrine of
Non-recognition"), New York, 1951, p.411 ff.

있지 않다는 事實을 明白히 提示하고 있다.

〈實効性的의 原則과 適法性的의 原則〉 : 앞에서 보았듯이 國際法上 主体로서의 國家의 法的 地位를 決定하는 國家承認의 制度는 現實적으로 個別國家의 自由裁量에 속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國際法學의 現實的 通說을 따르면, 國家의 法的 主体로서의 要件은 適法性的의 原則에 依拠하기 보다는 實効性的의 原則이 支配的이다.

이러한 점은, 예컨대 1951년 3월 21일 英國政府가 下院에 提出한 聲明에서도 一例를 찾아볼 수 있다. 즉 同聲明에 의하면, 政府의 承認은 그 政府의 性格이 英國政府의 贊成을 받고 있느냐의 여부 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¹⁸⁾

그리고 本研究의 主題인 分斷國의 國際法上 正統性問題와 關聯하여 보다 適合한 例는 브란트의 "東邦政策" 以後에 있어서의 東獨에 대한 西獨의 立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西獨政府가 東獨의 國家性을 認定한 것은, 물론 明白히 밝히고 있듯이, 國際法上 事實上의 承認도 法律上의 承認도 아니었다. 東獨을 承認한 것은 獨逸憲法上 하나의 獨逸의 部分國家로서 認定한 것이며, 그것은 東獨 領域內의 現實적으로 有效한 統治力을 認定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는, 韓國政府의 北韓에 대한 立場도 거의 類似하다고 할 것이다.

註 18) 南基煥, 前掲論文, (統一政策, 第一卷, 第二号, 1975), p.83 參照

어쨌든 그러한 西獨의 立場은, 엄격한 Hallstein 原則에 의하여 對東獨關係를 展開하였던 시대의 그것과 比較할 때, 그것은 實効性의 原則에 기운 結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UN 決議에 依해서 侵略者로 規定된, 따라서 國際法의 適法性原則에 反하였다는 구경을 받은 中共이 오늘날 大多數의 國家들에 依하여 承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代表權까지 獲得하고 있는 事實은, 오늘날 國際法이 適法性의 原則 보다는 實効性의 原則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인 論理로서, 支配的인 現實이라 하여 正當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實効性의 原則이 支配的이라 하더라도 適法性의 原則은 國家의 對外政策에서 긴요한 準拠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適法性原則이야말로 國際社會를 法秩序로써 法律되게 하는데 根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世界平和의 實現과 國際的 法秩序의 確立을 爲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貫徹되어야 할 適法性原則으로서 民族自決의 原則을 들 수 있다. 이 原則은, 위에서 考察해본 相異한 諸國際法圈에 있어서 例外를 찾아볼 수 없는 共通의 基本理念으로서 모든 國家에게 認定되고 있는 原則이다. UN 憲章과 그리고 1966년 12월 16일에 UN 總會에서 採択된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權利와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協約"도 "모든 民族은 自決權이 있다"는 事實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原則은, 本研究의 核心的 分析目的인, 分斷國問題의 解決을 위한 原初的인 法的 命題이기

도 하다. 分断国問題 特有의 國際的 性格은 이러한 民族自決權에 反하여 成立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歴史的인 現段階에서 이와 같은 民族自決原則은, 相異한 모든 國際法 体系가 共通的으로 基本理念으로 삼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現實的인 政治的 對立에 利用되고 있을 뿐이다. 共產主義者들은 이 民族自決原則을 푸로레타리아 階級の 階級鬭爭 乃至 社會主義革命의 一部分으로 이해하여 푸로레타리아 階級の 利益과 意思가 包括됨으로써 實現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強大國들은 그들간의 利害調整을 위한 勢力均衡原則에 合致되는 方向에서만 이 民族自決原則을 임의로 解釋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分断国問題는 그와 같은 強大國政治의 희생物로서 그 存在意義를 갖는다. 그리고 分断된 當事國들에 관한 한, 特히 共產主義者들은 푸로레타리아國際主義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自決權을 拋棄하는 方向으로 問題를 逆行시키고 있는 것이다.

4. 分断國家의 概念 및 類型

우리가 사용하는 分断國家란 말은 한나라가 強國政治의 희생으로 他意에 의하여 分断되어 왔고, 또 分断된 나라의 再統一에의 要求가 그나라 國民間에 強熱하여 繼續·國際政治에 影響을 가져올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具體的으로는 獨逸 및 韓國이 第二次大戰末期에 美·蘇兩國의 利害關係가 이地域에서 對立하여 獨逸과 韓半島를 서로 他方에 전적으로 넘겨줄 수 없다고

여겨 分割占領했던 곳에, 다시 그러한 미소의 對立을 배경으로 하는 政治權力이 생기게 되어 오늘날까지 分断國으로 存在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分断國의 概念的인 特徵은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¹⁹⁾

첫째, 第二次世界大戰 末期까지 하나의 나라로서 歷史와 傳統을 가진 나라가 自國民의 意思에 反하여 國土가 兩斷된 나라라는 점 둘째, 世界的 強大國들의 世界戰略과 關聯하여 重要한 位置에 있는 地域으로서 이地域이 어느 한 強大國의 排他的 영향하에 더해지는 경우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에 影響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地域이라는 점

셋째, 이와 같이 兩斷된 地域에는 각기 對立的인 政權이 存在하고, 그리고 統一을 원하는 民族的 要求가 그底流를 支配하고 있는 地域이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特徵을 基準으로 해 보면, 한때 分断國으로 알려져서 「두개의 中國論」까지 대두했던 中國의 경우는, 우선 兩政權의 對立的 存在가 있고, 다음으로 民族的 統一의 要求가 있다는 점에서

註 19) 李用熙·朴奉植, 分断國의 UN 同時加入問題가 韓國에 미칠 影響 및 對策, 中 「分断國問題의 性格」(國土統一院 學術 用役研究, 1972), p.1

洪承勉氏는 分断國의 概念을 「國際型」과 「內爭型」으로 区分하여 說明하고 있다. 參照→洪承勉, 「分断國問題의 再 發見」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研究所, 東西獨과 南北韓, 1973) pp.15-21

는 分斷國과 같은 印象을 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中國은 強大國의 世界政策에 의해 分斷된 것이 아니고 國內革命에 의해서 두개의 政府가 생긴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分斷國의 例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印支半島의 경우, 특히 南北越의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 역시 다른 많은 分斷國의 경우와 類似한 점이 있으나 獨逸이나 韓國의 경우와는 사실상 區別된다. 1945년 7월의 Potsdam 會談에서 北緯 16度線을 分界線으로 하여 南쪽은 聯合軍을 구성하는 英國軍의 作戰地域으로 정해지고 以北은 中國軍의 作戰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印支分斷의 先例가 생겼다.²⁰⁾

그러나 二次大戰이 끝나고 仏蘭西에 新政府가 樹立되자 美國과 英國의 同意로 불란서는 옛植民地를 회복하기 위하여 北緯 16度線 以南의 英國軍支配地域을 수복하고 뒤이어 中國軍이 支配하던 地域도 수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하노이에 胡志明政權이 樹立되어 그것에 완강히 대항한 결과, 불란서와 胡志明간의 協定에 의해서 北緯 17度線을 境界로 南北越이 成立을 보게 되었다.²¹⁾

여기에서 보듯이 印支半島의 分斷은 獨逸이나 韓半島와는 달리 美·蘇兩大國간의 軍事作戰地域의 區劃 또는 勢力範圍 問題와는 직접적인 關聯이 없다.

註 20)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Documents Relating to British Involvement in the Indo-China Conflict, 1945-1965, 1965,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p.6

(註 21). Ibid., p.9

다만 強大國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고자 구식민지의 회복을 要求한 仏蘭西의 要求를 들어주다보니 생긴 仏蘭西와 越南人간의 잠정적인 分界線에 지나지 않았다. 어쨌든 越南問題는, 分斷國으로 取扱되는 例가 없지는 않지만 分斷의 歷史와 過程인 典型的인 分斷國家인 韓國이나 獨逸과도 다르며 순전히 國內的인 事情으로 인하여 分斷 狀態에 있는 中共의 경우와도 다르다고 하겠다. 특히 越南問題는 그 分斷의 理由가 韓國이나 獨逸과 같이 世界政治的 면에 있지 않고 比較的 國土적인 事情에 관한 問題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0年代 以後에 있어서의 인도차이나事態가 志向하는 性格과 方向은 쉽게 수궁될 수 있다.

예컨대 越南과 다른 印支에서의 戰爭은 원래 局地戰의 一端으로서 오래 繼續되어도 強大國간의 關係에 큰 變化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基本的인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比하여 韓國戰爭의 경우는 美·蘇가 모두 그것의 長期化에서 오는 危險을 피하기 위하여 早期終戰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獨逸의 경우 이곳에서의 어떠한 武力衝突도 強大國간의 衝突로 發展할 性質의 것이었기 때문에 過去 四半世紀동안 危險한 고비가 많았으나 武力衝突만은 끝까지 피해왔던 경우와도 對照的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좁은 의미에 있어서 分斷國은 東西獨과 南北韓의 境遇가 있을 뿐이다.

이와같은 諸要因을 考慮하여 廣·狹義의 分斷國들을 類型別로 整理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表化할 수 있을 것이다.

分 断 国 의 類 型

類 型	I	II	III	IV	V
	東西獨	南北韓	南北越	台灣·中共	印度·파키스탄
分断 原因	國際的 要因 美·蘇 冷戰		國內的 要因 內亂·內分		
形 態	分断 国		分裂 国		(分裂固定)
再統一想定与否	想 定				不想定
分断直前の 源泉國家有無 및 形態	有	無		有	
	獨逸帝國	日本植民地	仏植民地	中華民國	印度帝國

끝으로, 앞에서 考察한 狹義의 分断國의 概念的 特徵을 包含하여 廣義의 分断國問題가 내포하고 있는 國際政治的 特性을 整理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区分하여 要約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世界政治에 있어서 不安地域 또는 紛爭地域으로 있으며 따라서 世界平和를 위해 不滿足스러운 狀態에 있는 地域이란 點에서 共通的인 特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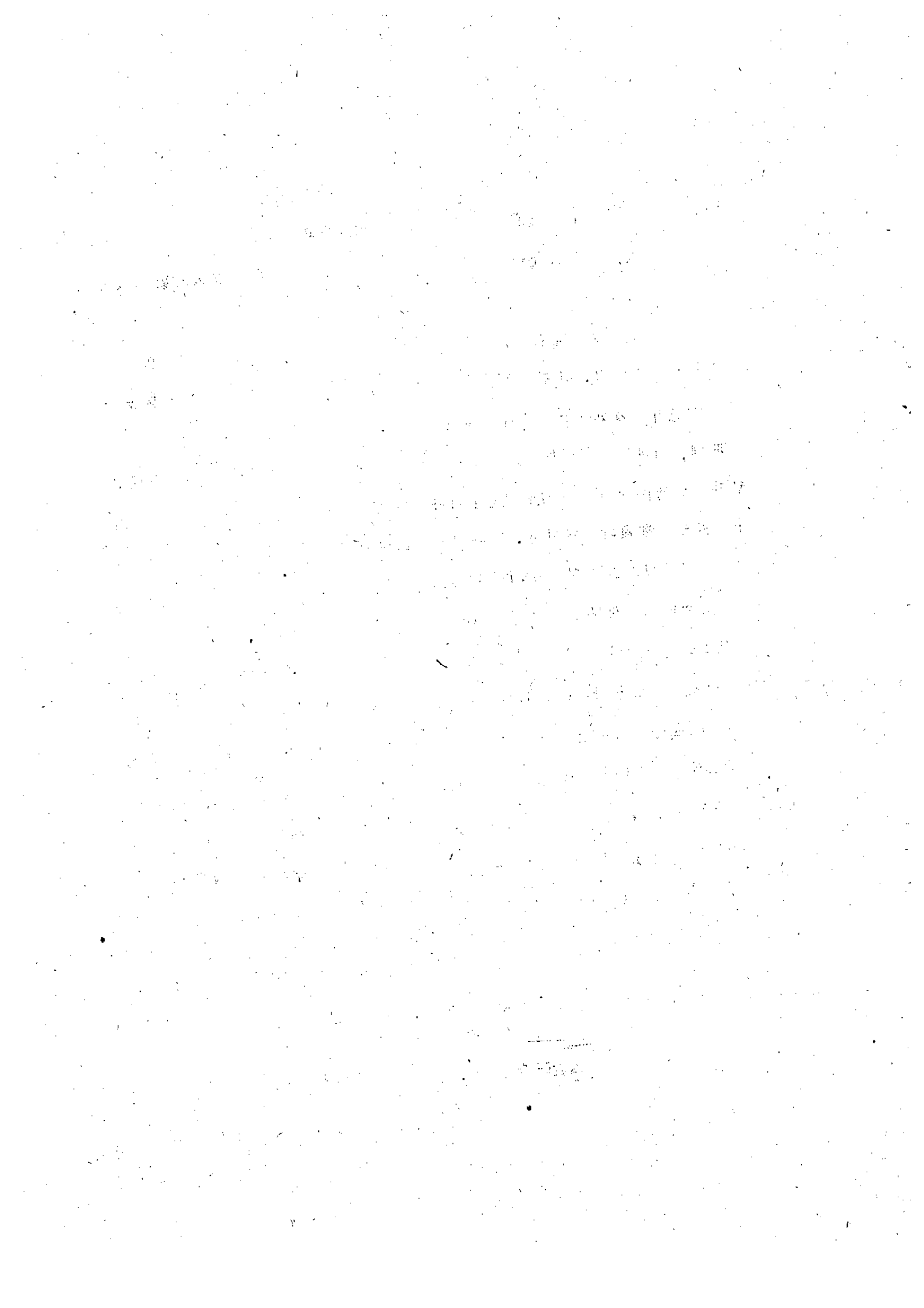
둘째, 따라서 이 地域의 現狀을 固定化하고 이를 보다 安定된 狀態에서 分斷을 公式化하고 制度化하려는 強大國의 政策對象地域이 되고 있다.

셋째, 이들 分斷國家들은 모두 民族的 單一性を 主張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方法으로든지 再統合되어야 한다는 民族統一의 熱意가 강하다는 점이 共通的이다.

넷째, 이러한 再民族統一 또는 再統合의 正當하고 神聖한 要請은 쉽게 強大國들의 勢力擴張競爭이나 他方에 對한 對抗措施로 利用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分斷國의 固定化와 그리고 그 方法으로서의 UN 同時加入은 分斷에 責任이 있는 나라들이 이 正當하고 神聖한 民族的 再結合의 要請을 서로 利己的인 政策 目的으로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²²⁾

그리하여 오늘날 國際政治에서 많이 論議되고 있는 소위 分斷國 家의 問題는 이러한 分斷國家들이 가지고 있는 國際政治上的 問題 國家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強大國들은 分斷의 歷史的 性格의 차이나 分斷狀態의 政治, 經濟, 社會現狀의 차이에 對해서는 별로 觀心이 없으며 強大國政治의 私生兒로서의 問題性에만 強大國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겠다.

註 22) 李用熙, 前掲用役研究, p.4



(三) 分斷國의 正統性에 관한 國際法理論

分斷國家는 分斷起原이 冷戰이고, 이 現象이 「多國家的 民族」(Multistate nation)으로 되어있는 것이 典型的인 特徵이다.¹⁾

指向的 目標로서 하나의 「民族國家」(Nation-state)를 想定한다고 볼때 어떠한 秩序속의 民族國家이나하는 點이 問題가 되고 이러한 政治現實的 側面이 「正統性」(Legitimacy)論의 根源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개의 部分國家에서 하나의 民族國家, 즉 總括國家로 가는 길은 一方의 武力的인 征服(Conquest)이나 政治的인 統合(Political Integration)으로 나누일 수가 있다.²⁾

이 두가지 면을 동시에 考慮하여 본다면 分斷의 原因이야 어쨌든 分斷現象의 持續過程에서 보여준 經驗的事實이 理論的側面에 상당한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註1) 勿論 「小谷鶴次」같은 日本學者들은 分斷이 冷戰的 國際秩序와는 無關하고 分斷國의 異質的인 內部要因과 現象的側面을 重視하고 있으나 如他學者들은 上記한 두가지 점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는것 같다.

「小谷鶴次」 “分裂國의 法的地位”, 國際法外交誌, 第618卷, 第1号, F.1”

2) Walker Connor, “Political Integration in Multi-national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8, No.2 (Nov.2.1965) P.105.

1. 單一正統性理論(1); 2 典型

部分的인 主体로서 分断國家兩側은 어느쪽이건간에 源泉國家(Original State, Etat originaire) 내지는 總括國家의 單一的인 主体로서 모든 對內外的인 權力을 行使하려고 하는 矛盾的關係에 있다. 이러한 關係를 事實 그대로 나타내준 理論이 典型的 單一正統性 理論이다.

部分國家에 대한 總括國家의 法的權限을 부여하는데 不平等原則을 적용하여, 部分國家의 一方을 合法的인 秩序로, 他方을 非合法的인 秩序로 区分, 單一部分國家에게만 總括國家의 正統性을 부여하는 理論이다. 이는 領土의 縮少를 權限의 縮少로 보지않고 管割領域의 部分的減少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國家核心論」 或은 「核國家論」(Kern-staat theorie)으로 集約表現된다. 그렇기 때문에 W. 마샬 폰 비베른슈타인(W. Marschall von Bieberstein)은 “聯邦共和國은 國家가 아니라 그 政府의 實際的인 權限 밑에 있는 總括國家의 部分이다”고 지적하여 獨逸聯邦共和國(西獨)이 部分國家임을 闡明하고, 聯邦共和國은 領土的으로 暫定的이고 制限的인 狀態이지 그가 行使하고 있는 權限의 限定性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³⁾

註3) W. Marschall von Bieberstein, “Zum Problem der völkerrechtlichen Anerkennung der beiden deutschen Regierungen, Ein. Beitrag Zur Diskussion über die Rechtslage Deutschlands.” Berlin, 1959. p. 140.

실제로 1959年以前, 即 独逸聯邦(西独)이 一方的인 外交政策으로서 宣稱된 「할슈타인」原則(Halstein Doctrine) 적용기의 西独의 立場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不承認主義時代(1959年以前)의 韓國의 立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合法的인 一方으로서 하나의 部分國家가 行使하는 對外的인 權限에 대한 어떠한 違背現象도 용납될 수 없다는 排他主義의 原則인 것이다. 이와같이 國家核心論은 그 基本原則에 있어서 두 部分國家중 一方을 總括國家와 同一視하여 國家核心으로 보고, 他方을 非合法的인 事實上的 存在로만 認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他方 呼稱用語 自体도 “괴뢰정부” “괴뢰체제” “위성정부” “점령지구” 또는 “평양” “동백림” “당국” 등으로 實體의 呼稱으로 局限된다.

國家核心論은 前提되는 主要 法的效果 내지 招來되는 主要法的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總括國家 全域內의 사람과 財産을 管割하는 權限은 오로지 合法的 政府에게만 부여된다.

둘째 : 在外國民 및 그 財産에 관한 管割權 역시 合法的 政府에게만 부여된다.

셋째 : 合法的 政府에 의해서 締結된 모든 對外條約은 總括國家 全般에 拘束力을 갖는다.

넷째 : 以上の 諸 法的權限 및 法的効力은 非合法的 政府에게는 당연히 排除되며, 실령 그러한 것들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들은 당연히 無効가 된다.

核国家論을 強力히 表明해온 「할슈타인」原則 (Halstein Doctrine) 적용기의 西獨의 立場에서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基本要件을 根拠로 하고 있다.

첫째 : 獨逸帝國은 1945年以後에도 계속 存在하고 있다. 1945年 四大國 占領 역시 完全한 「分割」(Dismemberment)이나 「完全占領」(Debellatio)이 아니라 軍事的 便宜에 의한 것이다.

둘째 : 東獨의 樹立은 國民의 自由로운 意思와는 無關하게 設立되었으므로 「民主的 正統性」(Democratic legitimacy)이 欠如되어 있다.

셋째 : 東獨은 實際적으로 蘇聯의 軍事占領下에 있으므로 自主的 獨立性이 欠如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根拠로 主張해온 西獨政府의 單獨代表權主張은 獨逸問題에 利害를 가지는 西方諸國에 의해서만 認定된 바 있었다. 4)

註4) 1950年 9月3日 美·英·仏, 3國 外相會議의 宣言參照.

「獨逸이 統一을 成就할 때까지는 3國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西獨)만이 자유롭고 合法的으로 形成되었기 때문에 國際的 事項에서 獨逸의 代弁者로서 獨逸國民을 代弁하고 代表할 수 있는 唯一의 獨逸政府로 간주할 것이다」

이 宣言은 1954.1.3 London 五個國 會議後의 議定書에 다시 採択 以後 NATO國家들의 수락을 거쳐 1954年 西獨의 NATO加入에 관한 「파리」條約의 前文에 採択됨으로서 NATO 加盟國에 國際法的 制約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時代狀況과 國際政治秩序의 展開에 따라서 「排他主義」의 理論은 現實的 自体變換의 壓力을 外面할 수 만은 없게 된다.

2. 單一正統性理論(2): 修正型

單一正統性理論의 典型에다 現實이라는 實踐的 次元을 加味한 統合指向的 理論이다. 極端的 「이데올로기」(Ideology)의 對立 만으로도 「블록」(Bloc)을 形成했던 冷戰的秩序속에서는 排他的 外交政策이나 對外路線이 意味가 없진 않았으나 「이데올로기」(Ideology)를 超越한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의 追求와 國際秩序의 變化는 分斷國의 正統性을 따지는 法的理論에서도 現象을 도외시할 수 만은 없게 되었다. 5)

특히 獨逸에 있어서 이와같은 理論의 出現은 分斷獨逸이 國際力學的 次元에서 비록 制約된다는 事實을 獨逸人 스스로가 認知하였다는 點이 그 背景을 이룬다. 6)

理論的側面에서 보아 領土의 實効性(Effectivity)을 考慮하여 單一正統性理論 典型的 排他性을 緩和한 것으로서 特徵지워진다.

註5) 이러한 現實은 「印·파」戰爭當時 「少權民族의 解放」이라는 自國의 「이데올로기」에 優先하여 「파키스탄」의 立場을 지지한 中共의 外交政策的 態度는 中·蘇의 理念對立이라는 政治現實앞에 「이데올로기」의 無力化를 나타낸 것이다.

6) Arthur M. Hanhardt, Jr. "Divided Germany? And the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7 (Nov. 2, 1973) P. 263.

즉, 部分國家중 一方만이 總括國家의 合法性 또는 同一性(Identity)을 代表한다는 基本的 立場을 堅持하되 다만 現實的 要素를 감안하여 非合法的 部分國家의 關係 領土內의 管割權을 認定함으로서, 國際的 協約에 의하여 總括國家를 決定的으로 拘束하는 것만을 排除하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西獨)은 獨逸民主共和國(東獨)이 그가 統治하는 共同社會에 必要的 行政에 관한 모든 法令을 내릴 수 있으며, 오로지 그가 統制하는 領土管割과 住民에 直接的으로 關係되는 問題에 대해서는 國際協定の 締結을 결코 반대할 수 없다는 主張이 代表的 理論이다. 7)

이 理論은 平和共存이라는 前提를 內包하고 있다. 韓半島와는 狀況與件이 다르긴 하나 兩獨은 軍事的으로 NATO와 「바르샤바」條約機構에, 經濟的으로 EC와 Comecon에 각각 加入되어 있음으로서 高度의 勢力均衡을 意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兩獨은 国力의 隔差를 妥當性있게 받아 들이고 있다. 勿論 国力이란 複合的인 것으로서 有形的인 要素와 無形的인 要素로 나누일 수 있으나, 이러한 두가지 側面에서도 兩獨은 뚜렷한 對照를 나타내 주고 있다.

註 7) F.A.Mann, "Germany's present Legal status revisited"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67. p.796.

또한 Martin Kriele의 部分國家 理論 역시 이 範圍에 包含시켜서 集約할 수 있다.

3. 複數正統性 理論

分斷國에 있어서 總括國家의 權限과 領土를 각각 양 部分國家에 걸쳐는 理論으로서 單一正統性을 主張하는 核國家論과 같이 從來 있어왔던 國際公法의 發展된 理論에서 出發하고 있다.

그러나 複數正統性을 主張하는 이른바 縮少國家論은 두개의 部分國家를 同等하게 取扱하여 각각 完全한 國家로 看做한다. 따라서 必然적으로 國際法上的 「分裂」(Dismemberment)이나 「分離」(Secession)에 귀결하게 된다. 각 部分國家들의 法的地位는 合法的이며, 再統一에 관한 民族自決原則을 내 세운다.

이러한 理論은 印度와 파키스탄과의 關係와 東獨의 경우를 들수 있는데, 前者의 경우 源泉國家로 부터 完全한 部分相統이 行하여 졌고 實事 再統一에 관한 可能性을 想定하고 있다 하더라도 現實的으로는 별다른 意味가 없는 名目上的 語句로서 存在할 따름이다.

그러나 兩獨問題를 보는 東獨의 立場은 印度, 파키스탄을 보는 兩當事國들의 見解와는 基本的인 見解差異가 있다. 「分斷의 起源」 「分斷의 展開」, 「分斷의 解決」의 세가지 면에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冷戰을 分斷의 起源으로 보는 獨逸問題에 관해서도 東獨은 西獨과는 對照的인 法理論을 展開한다. 獨逸의 分斷을 보는 歷史的인 眼目에서부터 그렇다.

1945年 5月8日 無條件 항복文書에 調印한 것은 「獨逸이 아니라 파쇼主義的인 獨逸帝國主義였으며 獨逸人民이 아니라 獨逸의

大브르조아와 그들이 세운 不法犯罪団体였다」는 것이 独逸問題에
입하는 東独의 基本政策姿勢이다. 8)

東独이 보는 西独은 패망한 帝國主義體制를 繼承한 새로운 帝國
主義的 資本主義國家이며, 東独은 弁証法的 歷史發展過程에서 必然的
으로 탄생한, 따라서 戰爭과 敗戰에는 아무런 關係이 없는 별개의
社會主義國家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独逸分斷은 歷史發展의 한
段階에 不過하며 우선 東独內에서 社會主義를 完成시키면서 資本主
義 西独과 平和共存關係를 維持해 나가면 社會主義의 궁극적인 勝
利를 통해 社會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独逸統一이 達成된다는 것이
東独의 展望이다.

이러한 背景下에 「二民族 二國家」理論이 現實化되어 왔다. 實
踐的인 展開過程에서 東独의 政治 및 社會安定度, 国力要素別 絶對
的 弱勢, 東独의 周邊의 狀況등을 考慮하여 變形되어 나타났다.

50年代 中半期の 國家聯合 (Konföderation) 案, 平和條約 締結
提議等으로 東独의 地位向上을 도모했고, 60年代 前半부터는 統一
論議가 자취를 감추고 「全体独逸」概念의 無効化運動이 展開되어
復敎正統性理論에 입각한 획기적인 政策變換을 하기에 이르른다. 9)

註 8) SED (東独 社會主義 統一黨)
中央委員會 發行 Einheit誌 May. 1965.

9) SED (東独 社會主義 統一黨)
第7次 全黨대회 ('67.4.17 ~ 22)에서 이러한 政策은 公
式化된다. 67年 7月에는 「對外貿易 및 独逸內部交易省」
이 「對外貿易省」으로 改稱됨으로서 「独逸內部」(Innerde-
utsche) 라는 말은 意味를 完全히 상실한다.

東獨政策은 1967年 第7次 SED全党大會를 契機로 첫째, 兩獨은 서로 外國이며, 둘째, 獨逸에는 兩民族이 있다는 事項이 政策遂行의 前面에 나타났다. 東獨이 보는 西獨과의 關係는 東獨과 「프랑스」와의 關係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國際法의 규범에 따라 取扱될 問題이지 西獨側이 主張하는 國內法的인 次元에서 다뤄질 對象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兩獨關係는 國際法的 次元에서 國家의 承認이라는 要求와 이의 保障으로만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西獨의 一方的인 承認意思의 表明으로 이루어지는 明示的이며 法的인 承認뿐만 아니라, 西獨과의 條約締結, 外交關係樹立, 國際機構 및 國際會議에의 同時參與를 통한 默示的인 事實上的 承認이 東獨이 目標속에 包含되어 있었다.

東獨은 獨逸이라는 「總括國家」는 民族이라는 次元에서 默연하게 認定하고 있으나¹⁰⁾ 「二民族論」에 입각한 複數正統性理論은 1972年 東·西獨基本條約締結以後에 SED의 基本見解와 理論으로 登場하게 되었다.¹¹⁾

註 10) 1968年 獨逸 民主共和國(東獨)의 修正된 憲法 第1條에 「獨逸 民主共和國은 獨逸民族의 社會主義國家이다」라고 規定하여 默연하나마 民族의 單一性을 法的으로 認定하고 있다.

11) Spiegel(Weekly), 1972.18. p.18에서 再錄.

SED의 教育部長 「하인츠 바르테」(Heinz warth)의 表現: "SPD의 黨首 「브란트」가 民族의 單一性을 세우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立場을 취해야 할 것인가?" 라는

型態上으로 分斷을 定着시키면서 質的인 統合을 진척시키려는 것이 西獨의 「一民族 二國家論」이라면, 東獨의 「二民族 二國家論」은 型態와 本質의 兩面에서 分斷의 完成, 즉 分裂(Dismemberment)을 指向하고 있다.

複數正統性 理論의 주요 法的인 特徵은 國際法上 一國家의 分離(Secession) 즉 二國家의 法的인 生成을 가져오며, 이들의 法的地位는 둘다 同等하게 合法性을 부여 받는다.

再統一에 관한 法的 实效性보다 適法性에 입각한 民族自決原則에 關係될 뿐이다.

4. 部分國家不完全 正統性理論

「縮小國家論」이나 「部分同一性 理論」과 같이 總括國家와 두 개의 部分國家 3者間의 關係를 연관지으면서, 어느 部分國家도 結局 總括國家 自体일 수는 없고, 따라서 總括國家의 完全한 正統性을 代表할 수도 없으며, 總括國家와 同一한 行爲能力을 가질수도 없다는 理論이다.

說問에 대한 答弁으로서

“그런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SPD 당수가 말하는 民族의 單一性은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다. 기본條約(1972.12.21 調印)과 그 부속의정서의 어디에도 民族의 單一性이나 獨逸의 單一性 또는 全体獨逸國家로서의 獨逸에 관한 言及이 없다. 民族問題에 대해 歷史는 이미 決定을 내렸다. 우리의 고향은 「獨逸民主共和國」과 또 그 속에서 形成된 「社會主義 民族」이다”라고 表明하였다.

이 理論은 東·西獨問題에 대한 「프랑스」理論家の 立場이기도 하며, 「F. Bonassies」의 「지붕이론」(Dach Theorie)을 代表的으로 들 수 있다. 이 理論에 의하면 分斷國에 있어서 分斷에도 불구하고 法的으로는 總括國家가 存統하나 政治的 行爲能力이 欠如되어 있다고 보는 立場이다. 이러한 總括國家에 대해서 어느 部分國家도 同一性을 主張할 수 없으며, 總括國家의 行爲能力이 欠如되어 있는 동안은 兩部分國家는 占有하고 있는 領土위에서 또 그들의 固有한 問題에 관해서는 國際的 國內的 管割權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權限은 각 部分秩序가 嚴格한 意味의 國家로 行使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어느 部分國家도 總括國家와 同一視될 수 없으며 單獨으로 總括國家 名義로 새로운 權利義務를 부담하거나 既存의 權利를 拋棄할 수 없으며 國際事項에서 單獨代表權을 主張할 수 없게 된다.

다시말하여 두개의 政治的인 主体가 對內外的으로 제아무리 潛在力을 發顯시킨다고 해도 總括國家일 수 없고, 또 單純한 代數和로서 總括國家의 正統性을 代弁할 수 없기 때문에 두개의 分斷國家는 同等한 法的 地位를 認定받으면서 分斷된 現象만큼의 正統性 欠如를 免치 못하고 있게 한다.

이러한 理論 역시 몇가지 法的인 特徵을 가진다. 첫째: 分斷現象에도 不拘하고 法的으로 總括國家가 存在한다. 둘째: 어느 部分國家도 總括國家의 同一性 내지 正統性을 主張할 수 없다.

셋째: 部分國家는 相互 同等한 法的 地位에 있다. 넷째: 部分國

冢는 각기 領土上 또는 固有한 問題에 관한 國際的 國內的 管
割權을 갖는다.

5. 實力主義理論 (狀況主義理論)

分斷國家에 대한 理論體系는 總括國家와 兩 部分國家間의 相互
關係에서 또 分斷의 展開過程에서 意味를 찾아왔다. 그러나 이러
한 相互關係를 단순히 어떤 狀況속의 두개의 行爲主体로 보고 狀
況與件의 變化와 이에따른 임기응변적인 方法論을 導出해내는 立場
을 實力主義理論이라고 묶어 보았다.

이는 總括國家와 兩 部分國家와의 關係를 전혀 無視하고, 하나의
政治的 實體 (Political Actor)로서 狀況變化에 따른 實力主義가
國家의 正統性 및 同一性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主張하는 이른바
沒理論的 立場이다. 이 主張은 前提로서 高도의 融通性과 多樣한
再統一 方法論을 必要로 한다. 狀況與件의 變化를, 민감하게 認識
하면서 또 狀況變化를 誘發시키면서 部分國家의 對內外的 適應을
能動的으로 實現시키려는 機會主義的 現實論理이기 때문이다.

이 論理에서 보면 實力行使의 方法論으로서 具體적인 「戰略概念」
이 무엇보다도 重要視된다. 經驗的事實로 類推해 보면 이러한 論
理를 뒷받침하기 위한 現實的 方法으로서 「間接戰略概念」에 印 각
한 方法論 즉 「消滅方法」 (Erosion Method) 과 「蚕食方法」
(Piece Meal manoeuvre)이 兩 分斷國內部에 適用되었고, 國際力
學 關係에서는 迂迴的 方法으로서 他方에 대한 外交的 孤立을 強

要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12)

특히 8·15 解放後의 韓半島事態와 「베를린」(Berlin) 封鎖 등에서 보여준 蘇聯의 方法論과, 6·25, 1·21 事態, 南北共同聲明, 南北對話 등 一連의 過程에서 보여준 北韓側의 方法論이 바로 이러한 範疇에 包含된다. 13)

특히 「迂廻戰略」으로 내세우는 分斷國 「他方의 外交的 孤立」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適時適切한 自体變形과 14) 適用으로 國際的인 浮動主義(Marginal Actors) 들을 吸取 내지 유리시키고 있는 點을 엿볼 수 있다.

註 12) Andr'e Beaufre, An Introduction to strategy, 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65, pp110 ~ 120

13) 8·15 解放後 대구항명사건, 제주도 반란사건, 여순반란사건 등과 공비들에 의한 극심한 社会的 混亂期의 北韓側主張은 「平和會談提議」였다. 그러나 일단 狀況與件이 北韓側에 有利하게 成熟되었다고 判斷되고, 軍事力의 優勢를 確保하였다고 判斷되는 時期에는 武力侵攻의 直接行動(Direct Approach)으로 轉換하는 것이 北韓이 사용한 「間接戰略」이고 이것은 그후 北韓의 內部秩序와 聯關하여 계속적인 反復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14) 共產圈이 내 세우는 이데올로기로서 「被壓迫民族의 解放」, 「少數民族의 自決權保障」, 「主體思想」, 「反帝國主義」, 「反植民主義」, 「人民民主主義」, 「獨自路線」등을 든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狀況變化에 따라 適時適切하게 適用하여 왔다.

方法論에 치중하는 狀況主義理論은 몇가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 : 總括國家는 하나의 可能力 또는 潛在力으로 보고, 이러한 可能力은 狀況에 따른 再統一 手段을 통하여 具顯된다고 主張한다.

둘째 : 總括國家의 代表權 역시 狀況에 따라 部分國家 一方의 우세한 實力에 따라 變動될 수 있다. 셋째 : 결국 總括國家와 部分國家의 關係에 대한 理論의 必要性은 無視된다.

(그러나 理論을 無視하기 위한 理論의 必要性은 더욱 強調된다)

이상과 같은 主要特徵은 分斷國問題解決에 있어서 說得力있는 經驗的인 背景을 가지고 있다. 中國과 같은 경우 越等한 要素別 國力差異에서 빚어진 单独代表權의 急轉倒, 「印度, 파키스탄」 關係에서 他方으로 부터 「벵글라데쉬」의 分離, 베트남 경우에서 보여준 軍事作戰의 結果로 인한 分斷解消等은 이 論理의 實踐的인 示唆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國際政治의 場이 理論과 法秩序의 適用對象으로서가 아니고 力學的인 關係狀況의 典型的, 本質的 要素를 갖고 있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諸理論의 批判>

分斷이라는 미묘한 政治現實을 對象으로 하는 「分斷國의 正統性 理論」은 普遍的인 妥當性을 認定받기란 現實的인 利害關係가 너무 얽혀있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當事者立場으로서의 우리는 어떠한 뚜렷한 法的命題를 設定하여 그 基本으로 삼고 政策을 遂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東·西獨의 경우를 中心으로 한 理論的인 比較檢討를 해본 것이다.

여기에서 主体的인 意味의 批判 또한 必要한 것이다.

1) 單一正統性理論 批判

上記 理論은 세가지 점에서 問題가 있다. 첫째는 : 理論의 普遍性 欠如이다. 이 主張은 冷戰的 排他性을 너무 強調한 나머지 政治現實的인 側面을 도외시하고 있다. 代表的으로 할슈타인原則適用期에 있어서 西獨의 東獨에 대한 「無權代理」權 主張은 어떠한 次元에서도 正當化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는 單一正統性理論은 一方的인 宣言效果와 이데올로기의 次元 이상으로 볼 수 없다. 國際的 多元化趨勢는 어떤 國家-部分國家의 경우까지 包含-의 一方性을 放置만은 하지 않게 되었다. 政治現實의 가장 複雜함을 對象으로 하는 理論體系의 하나인 「分斷 國 正統性論」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셋째 : 典型的 單一正統性理論은 部分國家의 內部政治秩序와 密接한 關係가 있고 그 關係와 類似한 對外關係에서만 意味가 부여된다. 이러한 現象은 과거 「블록」(Bloc) 中心體制와 極端的인 「이데올로기」의 對立狀況에서만 意味가 있는 理論體系이다.

2) 複數正統性理論 批判

東獨의 「二民族 二國家」論이 代表的이다. 이 理論은 첫째 : 國際法上 分裂 (Dismemberment) 이나 分離 (Seccesion) 은 分斷

이 固定化되어 異質的인 다른 行爲主体의 生成으로 되기 때문에 指向目標로서 總括國家의 想定은 전혀 意味가 없어진다. 둘째: 「二民族 二國家」論을 주장하는 東獨에서도 階級鬭爭에 입각한 統獨論이 주장되고 있는 이상 理論과 現實이 相互 矛盾된 狀態에 있다. 셋째: 民族的 次元의 現想으로서 再統合의 意志를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는 3가지 점에서 批判된다.

3) 部分國家 不完全 正統性理論 批判

이것은 유럽에서의 力學的 次元에서 본 分斷國의 國際地位 弱化라는 政治的 측면을 반영한 理論이다. 또한 日本의 몇몇 學者들이 보는 分斷의 解消方案에서 비친 見解에서도 南·北韓關係를 內部的 要因이 支配的으로 作用한 分裂狀態이고 두 部分國家의 어느쪽도 正統性이 欠如된 狀態로 보아, 日本이 취할 수 있는 南北韓 算距離外交政策의 理論的 뒷받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은 지나치게 觀念的이고 形式論理的이며 어느면에서는 순수이론에 불과한 理論體系임을 면할 수 없다.

4) 狀況主義理論 批判

一面性을 너무 강조한 理論이다. 狀況與件을 變化시키는 強力한 要素로서 理論體系의 積極的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 勿論 經驗的으로 現實化되어 온 實踐的인 妥當性이 認定되거는 하나 이를 補完하는 理論的 側面의 合理化가 前提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分断국이 想定한 總括國家를 指向함에 있어서 어떤 部分國家가 正統性있는 主体로서 再統合 過程에서 優先權을 부여받아야 하는가 하는 國際法的 理論을 論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敎訓的인 示唆를 導出할 수 있다.

첫째 : 「一民族 一國家論」에 입각한 統一指向은 政治理念的 次元에서 民族國家의 目標로서 追求되어야 한다.

둘째 : 分断국에 있어서 正統性理論은 政治的, 法的 实效性이 考慮되어야 한다.

셋째 : 狀況變遷 및 變化를 惹起시킬 수 있는 實力的 要素面에서 相對的인 優位 (Relative Superiority) 를 維持해야 한다.

이상 세가지의 要素를 考慮한 單一正統性理論의 不斷한 修正으로 狀況變化에 對處해야 할 것이다.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四) 韓國과 西獨의 承認政策 變轉過程과 法的 特性 比較

예비적 고찰에서도 대체로 알렸듯이, 국가의 正統性에 대한 국제법적 表現形式으로서 國家承認의 制度를 代表的으로 들수 있다.

그러나 이制度는 현실적으로 規範性(또는 適法性원칙)보다는 事實性(또는 美効性원칙)에 더욱 留意하는 個別國家의 自由裁量權行使에 의해서 주로 운용되어왔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성을 안고 있다. 특히 分斷國의 경우에 관한 限, 이制度는 法的 領域으로 포괄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띤다. 分斷體를 둘러싸고 있는 政治的 諸般事情에 비추어 볼때, 이와 같은 승인제도는 分斷國문제의 法的 解決을 指向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反對方向으로 전개되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兩分斷體의 國民들간에 再統一에의 民族的 要求가 強熱하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分斷國문제에 관련된 承認制度는 다시 복잡성을 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再統一에의 民族的 欲求와 分斷지속적 要因들간에 야기되는 갈등적 상황은, 한편 兩分斷體 스스로가 저마다 法統을 내세우면서 他分斷體의 法的 事實的 存在를 否認하는 정책을 취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政策을 可變的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다고 여겨진다.

本章에서는 전형적 分斷體인 韓國의 法的 正統性 問題를, 관련 承認制度의 法的 特性에 비추어, 檢討해보기 위하여 承認政策의 變轉過程 및 그過程에서 나타난 各國의

態도를 類型別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인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限 다른 典型的 先例인 西獨의 그것과 비교해보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 西獨이, 相對的 分斷體의 法的地位와 관련하여 提起해온
 承認政策은 絶對的 不承認主義(또는 Hallstein원칙)를 출발점으
 로하여 그것을 작기 변경시켜온 것으로 대표된다. 이와 같은 兩
 分斷體의 승인정책 변천과정을 同一平面에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韓國과 西獨의 承認政策 變轉過程 比較

韓 國	年 度	西 獨
第一期 絶對的 不承認主義時代	1948	第一期 Hallstein 原則施行期
	1949	
	1950	
	1951	
	1952	
第二期 相對的 不承認主義時代	1953	第二期 Hallstein 原則變轉期
	1954	
	1955	
	1956	
	1957	
第三期 競爭的 承認主義時代	1958	第三期 Hallstein 原則止揚期
	1959	
	1960	
	1961	
	1962	
第四期 實質的 承認主義時代	1963	第四期 Hallstein 原則廢棄期
	1964	
	1965	
	1966	
	1967	
第五期 적극적 승인주의시대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 Hallstein原則의 獨逸的 變轉

〈第一期〉인 Hallstein원칙의 施行期는 1954 - 59년의 6年間으로 볼 수 있다.

“西獨政府와 公式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第三國이 다시 東獨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것은 독일의 分割을 深化하는 非友好的인 行爲로 看做한다”는 이른바 Hallstein원칙이 아데나워政府에 의해서 公式으로 발표된 것은 1952년이지만 前後事情으로 미루어 1953년까지는 그 準備期間으로 볼 수 있다.¹⁾

西獨은 美英仏 三國의 런던聲明에 의해서 唯一合法政府로 인정을 받았고(54년3월) 그에 따라 연합國의 점령상태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이듬해에는 NATO加入이 환영되었다. 이러한 内外의 安定的 바탕위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Hallstein원칙은 그 代表的인 適用 事例를 유고, 큐바 및 아랍諸國과의 關係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유고의 경우, 西獨은 유고와의 經協條約(56.3)에서 24억 마르크의 원조를 戰時被害賠償條로 供與하기로 했었는데 57년 10월에 유고가 東獨을 승인했기 때문에 즉각 斷交覺書를 보냈던 것이다. 이때 西獨은 “外勢의 干涉이 없었다면 東獨이 存在할 까닭이 없으므로 東獨承認이란 明白한 內政干涉이 된다”고 유고를詰

註1) 金正均, “Hallstein原則과 分斷國의 法人格,” (大韓國際法學會, 國際法學會論叢, 第17卷, 第2号, 1972), pp.36-7.

難했었다. 2)

다음 큐바의 경우는 58년 西独과의 국교수립이 있는 후 통상관계나 문화교류가 활발했었는데 59년 큐바혁명으로 큐바가 東独과의 外交關係를 설정함에 따라(63.1), 領事關係나 經協關係 전반에 걸쳐 西独이 外交斷絶을 보이게 된 것이다.

아랍의 경우는 東独이 카이로에 총영사관을 개설한 데서부터 시작되어 西独公館이 철수하기에 이른(65년) 사례인데 특히 이 경우는 西独의 이스라엘援助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아랍國家들이 西独과 斷交해낸. 이를테면 Hallstein원칙의 逆利用과 같은 사태론까지 번졌던 경우이었다.

<第二期>는 Hallstein원칙의 變質期로서 1960 - 65년의 6年間으로 잡을 수 있다.

Hallstein원칙의 변질을 가져오게 한 배경으로는 첫째, 후르시초프와 케네디간의 비엔나會談(61년)을 계기로 대두된 美蘇간의 解氷부드 할때, 56년의 폴란드, 헝가리사태 이후 朝鮮衛星國들의 이른바 自由化운동 셋째, 61년의 西独의 총선거에 의한 진보적 연립內閣 등장등을 들수 있다. 이같은 사태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西独의 下院은 "西独의 국가이익이 희생되지 않는 限 東独을 承認한 諸國과 國交를 正常化해야 한다"고 결의하였고(61.6) 슈뢰더外相

註2) Die Bemühungen der deutschen Regierung und ihrer Verbündeten um die Einheit Deutschlands, 1955-1966, p.48.

도 "戰後時代의 끝을 맺고 東歐諸國과 關係改善을 企圖하는 것이 國利에 合致한다" 그 淸명하였으며 (63.11)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에르하르트首相은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理念的인 原理에 구애됨이 없이 東歐諸國과도 外交關係를 수립할 用意가 있다" 고 하였다 (64년).³⁾

Hallstein원칙의 이같은 변조는 東獨과 關係를 맺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以上 62년),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以上 63년) 등과 通商協定을 체결하거나 또는 통상代表部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實例를 보였다.

<第三期>는 Hallstein원칙의 止揚期로서 그 始發은 66년 基民·社民간 大聯政의 출범과 때를 같이한다. 키징거를 首相으로 하고 브란트를 外相으로한 西獨政府가 과감히 展開한 對東歐國정국 정책은 다음의 2가지 특징적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東獨의 淸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감안, 종래의 무조건적 無視의 태도를 止揚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점.

둘째, 독일국민의 대다수가 西方側에만 의존한 統獨접근의 노력이 實効性을 결여하고 있다고 確信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二大要素의 結合이 이른바 「東方政策」(Ost-politik)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註 3) 外務部, 外交研究院, 統一問題研究, 第二輯, pp. 349-57.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우리의 政策은 변했다. 종전까지 우리는 統獨이전에는 東歐諸國과 紐帶를 가지려 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統一問題에 앞서 우선 緊張緩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⁴⁾ 라고 한 브란트外相의 선언은 단순한 외교정책상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西獨은 루마니아와 國交를 수립하고 (67.1) 단절되었고 유고와의 國교도 再開하였으며 (68.8), 체코와는 通商協定을 체결하였다. (68.8)

西獨정부의 이와 같은 東歐國家와의 國교수립은 Hallstein원칙의 사실상의 폐기로 볼 수 있으나 公式的 폐기조치는 아니었다.

<第四期>는 Hallstein원칙의 廢棄期로서 그 출발점은 69년말에 실시된 총선거결과로 성립을 본 社會黨의 브란트首相과 自民黨의 쉘外相 聯立內閣에서 비롯한다. 브란트時代에 있어서 東方政策의 기본적 특징은, 그 以前에는 비록 소련을 포함한 東歐와의 접촉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해도 東獨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인데, 브란트時代에 이르러 東獨과도 직접적인 政治的 接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 代表的 實例로서 兩獨間의 一般 通行協定 및 基本條約 등을 들수 있다. 어쨌든 西獨은 브란트首相의 취임연설을 통하여 獨逸內 二個國家의 하나로써 東獨을 公式的으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59.10.28), 쉘外相의 의회연설을

註4) Willy Brandt, Friedens Politik in Europa, Frankfurt, 1968, pp.147-8.

통하여 Hallstein원칙을 公式적으로 폐기하는 선언을 하였다.
제기된 이래 15여년간 적용되어온 이 Hallstein원칙은 미소간의
긴장완화 조류와 브란트政府의 東方政策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
려는 기본정책이 加勢되어 공식적으로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⁵⁾

그후 브란트首相은 70년 1월 16일에 議會에 보낸 年頭敎書를
통하여, 베를린문제와 東獨문제 및 東歐와의 關係에 대한 基本政策
을 천명하고⁶⁾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獨波條約(70.11), 獨蘇條約
(71.8), 四大國 베를린協定(71.9),⁷⁾ 兩獨間 一般 通行協定
(71.12) 및 兩獨間 基本協定(72.11) 등을 체결하였다.

2. 韓國의 承認政策 變轉過程

<第一期>는 1948년에서부터 6.25 동란이 끝나는 55년까지
계속된 絶對的 不承認主義時代이다. Hallstein원칙의 독일적
施行이 사실상 54년이었음을 감안하면, 分斷國問題를 두고 分斷體

註5) R. Papini & G. Cortese, La ruptu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t ses Consequences, Paris, 1972,
pp.47-72.

註6) 브란트首相의 年頭敎書內容과 그것의 法的 根拠에 대하여는
참조→平和統一研究所, 統一政策, 第一卷, 第二号, (1975),
pp.280-91.

註7) 독. 不可侵條約, 全文은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IX, No.5, Sept., 1970, pp.1026-1027. 베를린에
관한 四大國協定文은 Ibid., pp.895-903.

의 法人格의 승인에 관련된 문제는 한국이 6년이나 先行되었던 셈이다. 8)

否定的 對立시대였던 이 시기에 美蘇共委가 결렬되고 美英中蘇會談이 소련에 의해 거부된 후 한국문제는 UN에 이관되고 한국이 UN총회에서 唯一合法政府로 승인되었던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에 한국을 승인하고 國交를 맺은 國家는 36 個國⁹⁾ 이었던데 반하여 북한을 승인한 국가는 불과 11 개국이었다.

그나마도 북한과 관계를 설정한 국가는 대부분 東歐의 共產國들이었고 아시아에서는 몽고, 中共, 越盟뿐이었다. 서로 상대방의 存立을 否定한 이러한 절대적 不承認政策이 한반도 現域과 UN議事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이 時期는 Hallstein원칙의 독일적 시행보다 앞서 있었으면서 더 엄격한 主義의 實踐期였다고 할 수 있다. 10)

<第二期>는 萬象會議後 中共의 진출이 현저하게 되었던 56년에 서 59년에 이르는 4년간인데, 이 기간은 動亂후의 불안정한 한국의 過渡的 狀況을 배경으로하기 때문에 相對的 不承認主義時代라고

註 8) 金正均, 前揚論文, (1972), p.39.

註 9) 亞州地域 11 個國, 美洲地域 16, 歐洲地域 8, 기타 1

註 10) 外務部 外交研究院, 韓国外交의 二十年, 1967.

pp.38-96.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기는 美蘇間의 停戰이 서서히 막을 내려가던 시기로서 그러나 他意的인 형식상의 休戰으로 인하여 對決의 意志가 底流를 이룬 채 凍結되어가던 시기였다.

이 무렵에 있어서 韓國과 關係를 새로이 다진 國家는 5個國인데 비하여 北韓을 지지한 나라는 12個國이었다. 北韓에 대한 지지가 증가된 것은 共產勢力이 中歐 및 阿·中東地域으로 安연된 政세를 반영한 때문이다. 11)

<第三期>는 60년에서 65년에 이르는 6年間에 있어서의 競爭的 承認主義時代이다. 冷戰의 終結에 따른 이른바 平和共存의 추세, 국제정치의 多元化경향, 地域主義的인 諸動態의 進展등을 배경으로한 이 시기는 亞阿地域諸國의 大舉 新生과 UN에서의 條件附 南北韓 同時招請論爭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을 代表한다. 南北韓을 구분하여 보는 諸國의 立場에도 상당히 복잡한 性格을 내포하기 시작하였고 남북한 스스로들도 상당히 意志的이고도 技巧的인 承認, 被承認의 遠近比較를 분주히 해낸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승인 또는 被승인과 관련된 새로운 關係國의 수호를 보면, 北韓을 지지하는 國家가 43個國인데 비하여 거기에 맞선 北韓지지國은 그 절반인 22個國을 나타내고 있었다. 12)

註11) 國外特別問題研究, 1969, pp.13-43.

(金正均, 前掲論文, p.40에서 再引)

註12) 上掲書, pp.13-43.

〈第四期〉는 66년에서 8.15宣言以後의 72년에 이르기까지의 7년간에 該當되는 實質的 承認主義의 時代이다. 印支事態에서 비롯된 中立國들의 左傾化와 그리고 北韓의 이른바 自主路線의 표방이 提起된 이시기부터 韓國은 實質的인 承認 또는 被承認의 效果를 겨냥한 努力을 傾注하였다. 이時期는 또한 中共을 비롯한 共產勢力이 韓半島를 비롯한 아시아諸地域에 政治的 影響力을 行專하려 할 것이 豫상되었던 것이며 또한 朝鮮어 아시아에서의 安保體制구상을 提示하면서 對中共 견제를 企圖하는 것이 표면化되었던 시기였다. 이무렵에 있어서 南北韓이 별도로 注目되어 變動을 보인 지지국의 숫자는 14 對 13이었고 北韓은 주로 阿·中東地域에서 浸透對象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¹³⁾

第4期末에 와서의 韓國 单独招請 및 南北韓 同時招請決議案에서는 「单独」固守가 54, 「单独」찬성 「同時」기권이 9, 「单独」「同時」 모두 棄權이 24, 「单独」棄權 「同時」 贊成이 9, 「同時」고수가 31이라는 錯雜相을 엿보이기 始作하였다.¹⁴⁾

自動上程期를 거긋은 UN에서의 韓國問題가 裁量上程期の 末期에 보인 이와 같은 表決狀況은, Hallstein原則의 韓國的 適用이 가져온 總実績이 UN의 圖面에 投影된 것으로서¹⁵⁾ 韓國政府의 翻期的인 政策的 轉換을 壓迫하는 事態로서 봐야 할 것이다.

註 13) 上掲書, pp.44-50

註 14) 朝鮮日報, 1970年 12月 5日字

註 15) 金正均, 前掲論文, p.40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여 韓國政府는 70年 朴正熙大統領의 8.15 慶祝辭를 通하여, 北韓에 對해 武力赤化統一論의 拋棄를 促求하고 그러한 條件이 充足되는 境遇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爲해 人道的 問題 및 보다 높은 次元의 問題의 解決을 위한 提案을 할 용의가 있으며 窮極的 統一時까지의 平和共存과 競争을 하자는 立場을 천명하였다. 韓國은, 이러한 8.15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南北韓 離散家族 찾기 運動」(71.8) 및 「 7.4 共同聲明」(72.7) 등을 成立시키는 方向으로 과감한 政策을 展開하였다.

<第五期>는 1973年 6月 23日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宣言으로 부터 始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同宣言을 通하여 韓國은, “緊張緩和을 위해서라면 北韓의 國際機構 參與에 不反對” 뿐 아니라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UN에의 同時加入도 不反對” 하며 그리고 “互惠平等原則 아래서 모든 國家에 門戶를 開放한다” 고 함으로써, 종래의 不承認主義를 公式的으로 폐기하는 立場을 취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될 수 없는 事實은, 주지하듯이 北韓과의 關係交涉 提議가 北韓을 國家로 承認한 것으로 解釋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國家와의 門戶開放이 直接的 적대국가에 게도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基本政策을 바탕으로 하여 韓國은 北韓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있는 中立諸國 뿐만 아니라 直接的으로 敵對하고 있지 않은 共產諸國과도 交流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3. 韓國과 獨逸의 境遇의 法的 特性 比較

西獨과 韓國이 같은 처지에 있는 點은, 단순히 같은 性格의 分斷國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唯一合法性과 單一主權性을 내세워 法統과 代表權을 견지하면서 統一을 向한 分斷外交에 實効를 거두어 보려고 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政策의 구체적 展開過程은 서로 區別되는 特性을 갖는다. 앞서 經濟的 繁榮에 注力했던 獨逸의 境遇는 그 「唯一合法」의 命題가 美英仏 三國의 地域的 次元에서 뒷받쳐지면서 間接的 혹은 留保的으로 매우 완곡하게 다루어지던 것을 時流에 따라 周辺域內에서 實勢를 굳힌 뒤에 그와 같은 主張을 掩蔽하면서 對東獨 및 對東歐關係의 事實的 政治實行에 있어서는 더욱 유연하게 신축성을 가지고 變轉시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는 西獨이 東獨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거부하면서도 「獨逸內의 한 國家」라고 인정함으로써 西獨이 全體 獨逸과 같다는 主張 - 單獨 代表主義 - 를 스스로 포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다르다. 韓國은 탄생때부터 UN 總會가 보편적인 國際的 次元에서 集團的 明示的인 方法으로 共同承認한 「唯一合法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特徵的 事實은 韓國問題가, 상당한 代議적 論議가 繼續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現地 事情이나 UN內의 지지분포상의 變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反應을 보이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韓國의 境遇는 承認政策의 變化나 相關的 外交關係의 진전을 위한 努力이라 하더라도 分斷的인 對立이나 競爭에서 우세

하려는 데에 主旨을 두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國際法上의 原理나 그 適用上의 差異도 韓.獨間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포츠담宣言이 獨逸의 合併政策을 비난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¹⁵⁾ 또한 獨逸의 解体政策을 거부했으므로¹⁶⁾ 獨逸은 分割이나 分裂 또는 併합된 것이 아니고 政治實體의 어떠한 變化도 없이 單一國家로서의 繼統성과 領土의 單一性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西獨政府는 당연히 第三帝國의 法統의 繼承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韓國의 경우는 分斷 직전의 源泉國家는 없기 때문에 (日帝植民地), 法統의 繼承者로서 主張할 수 있는 要件은 欠하고 있을 지라도, UN的 탄생國이라는 點에서 더욱 明白하게 普遍的 被承認體로서의 正統性을 主張할 수 있다. 獨逸問題와 韓國問題間의 特徵的 差異點은 Hallstein 原則 (또는 不承認主義)의 적용근거 및 그 變遷過程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西獨의 경우는 한동안 東獨에 대하여 民主政體의 資格 (國家承認의 適法性原則)이나 土着主權을 認定하지 않으면서도 事實을 무시하는 法理를 止揚해가며 政治的 實存을 전제로 한 法的 思考에 따라 自律律을 展開하였으며 事勢의 變展에 따라서도 國內의 基本律의 하나인 自由原則에 의한 統一法則을 強調하는 方向에서 Hallstein 原則을 수정하는 法理를 發見해왔다.

註15) Extracts from the Protocol of the Proceedings of the Berlin Conference, Selected Documents, pp.49-59.

註16) E. Fraenkel, op.cit., p.6

이러한 西獨의 경우에 比하여, 韓國은 北韓이나 그 外延勢의 好戰性 또는 팽창주의를 不法視하여 地域의 土着主權은 물론 그 法的 事實的 存在까지 오랫동안 公認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거기에 대한 法理의 모색은 比較的 소홀해왔던 것이 事實이다. 韓國이 北韓에 對하여 不承認主義를 계속 견지해온 데에는 正當한 法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國內律的 適法性原則에만 依賴해온 때문에 韓國問題에 대한 具體的 知識을 결여하고 있는 非同盟諸國이 韓國의 北韓에 對한 不承認主義를 그대로 納得하고 있지 않은 現象을 보이고 있음은 수증하기 어려운 일이다. 요컨대 獨逸과 韓國의 境遇에서 特徵적으로 發見되는 承認政策 變轉의 法的 性格은, 前者의 경우는 承認行爲가 지니는 法的 作用을 뒤로 미루고 政治的 機能面의 相對的 감각에서 Hallstein原則을 변모시켜왔는데 比하여 後者の 境遇는 政治的 機能面을 앞세운 法的 作用面의 競爭的 知覺에서 不承認主義의 實質的 不變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非UN적 환경에서 비롯된 獨逸問題에 對하여, UN의 環境에서 비롯되고 高조되어온 韓國問題는 그 性格上 UN에서 더욱 難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비교될 가치가 있는 特徵이라 할 것이다.

4. 獨逸方式의 韓國 適用上의 問題點

韓國과 西獨은 唯一合法性과 單一主權性을 내세워 法統과 代表權을 견지하는 方向에서 그들의 統一政策을 展開해오고 있다는

점을 共通的 処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統一政策의 구체적 展開過程은 예컨대 承認政策의 變轉過程의 比較에서 보듯이 明白히 區別되는 法的 特性을 나타내고 있다. 本章에서는 끝으로 韓國과 西獨의 이와 같은 特徵的 統一政策 展開過程이 어떤 基本的 條件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를 檢討하고 다시 거기에서 가능될 수 있는 獨逸方式의 韓國問題 適用上의 問題點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獨逸的 統一方式은 分斷國問題 解決方式으로서 理論的, 法的 側面에서 하나의 典範的 先例로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獨逸方式이 韓國의 境遇에 그대로 適用될 수 없는 根本的인 배경의 차이가 무시될 수 없다. 獨逸的 方式이 韓國에 適用될 수 없게 만드는 主要 背景적 條件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獨逸의 地域的 背景인 유럽은 美蘇의 超強大國의 勢力圈 區劃이 明白하고 그것이 NATO와 바르샤바條約機構에 의해서 그 均衡이 지탱되고 있는데 反하여 韓半島를 둘러싼 아시아의 경우는 美(日本포함), 中共, 소련의 利害關係의 調整이 勢力의 再編을

註 17) 이問題에 관해서는 尹謹植교수가 包括的이고 명료하게 檢討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尹교수의 理論을 정리하였다. 尹謹植, " 韓國統一에 있어서 獨逸方式의 適用上의 問題點, "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研究所編, 東西獨과 南北韓 1973), pp.544-48

위해 問題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獨逸의 경우, 쏘련과 東獨側이 現狀의 凍結 또는 「分斷文書」化를 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아시아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反對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兩獨關係에 있어서는 西獨이 緊張緩和의 「공세적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한편 韓半島의 경우는 北韓이 오히려 「공세적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的 條件의 差異로 미루어 볼 때, 예컨대 東西獨 UN同時加入問題와 南北韓 UN同時加入問題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그 가치평가의 처지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獨逸의 境遇는 同盟體間의 均衡모색을 통하여 유럽平和秩序 속에서의 獨逸問題 解決方式을 찾을 수 밖에 없는 制約性을 안고 있는데 비하여 韓半島의 境遇는, 民族的 協力を 前提로 한, 民族國家的 解決을 추구할 수 있는 可能性이 存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 條件은 獨逸의 境遇에 비하여, 韓半島의 境遇에서 「7.4 共同聲明」의 合意를 可能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條件 自体가 民族的 合意事項의 구체적 進展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南과 北 兩側이 모두 보다 유리한 合意事項의 展開를 자기쪽에 관련시키려는 競争關係에 때문이다. 北韓이 「자주노선」을 천명하고 「현상하에서 南北朝鮮의 平和協定」 체결을 提議하면서도 「연방제」 「南北朝鮮 政治

會談"을 提議하면서 "공세적 정책"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條件과 결부하여 究明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동시에 北韓이, 東獨의 경우처럼, 民族의 單一성과 배치되는 "國際法上的 承認"을 戰略概念으로 扞할 可能性이 없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두 번째 條件의 상이점에 비추어 볼 때, 緊張緩和를 위한 具體적인 努力 및 方式이 獨逸의 경우와 韓半島의 경우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戰略的 價值評價를 수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獨逸의 境遇는 西獨의 經濟力과 理論化的 뒷받침을 통하여 統一政策을 能動的으로 展開해 올 수 있었던 데 비하여 韓國의 境遇는 그러한 獨自적인 基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西獨의 경우 单独代表權, Hallstein 原則은 주로 西獨의 經濟力을 主要 手段으로 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브란트政府는 東獨에 대하여 무차별 同等權의 기반위에서 "合作된 共存"을 위한 협상을 提議하면서 實際의 外交政策에서는 東獨의 國際的 進出을 兩獨間의 關係改善時까지, 즉 西獨의 要求를 東獨이 받아들일 때까지 第三國이 東獨과의 關係樹立을 유보하라는 實際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韓國의 境遇는 現實적으로 獨自적인 手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戰略的 概念을 유지할 必要가 있을 때는 언제나 美國, 日本과 같은 友邦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취약점을 지녀왔다. 이러한 條件은 UN을 비롯한 國際機構의 포괄장에서 北韓에 비하여 韓國의 처지가 수세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세번째 條件의 상이점에 비추어 "共存"을 위한 積極的 政策이 西獨의 경우는 能動的 戰略概念을 수반하는데 반하여 韓國의 경우는 오히려 守勢的 처지에 물리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아온 3가지 基本的 條件의 差異點과 거기에서 야기되는 제반 問題點을 考慮할 때, 獨逸의 方式의 韓國의 適用과, 나아가서 獨逸의 方式을 능가하는 韓國의 方式을 도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解決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 韓國이 기왕에 보편적 水準에서 獲得하고 있는 唯一合法政府로서의 法統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공세적인 戰略概念"을 提示할 수 있는 처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獨自의 手段을 開發해야 된다는 事實이다. 經濟的 自立과 自主國防態勢의 確立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朴大統領의 統一政策 基本구상이 강한 根柢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現實的으로 國際社會의 輿論(특히 非同盟圈의 動向)이 어떻든간에 우리의 国力충실화를 통한 獨自의 手段이 先決되지 않는 한, 어떠한 統一政策도 그 의미대로의 實効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獨自의 手段의 開發과 法的 理論體系化야말로 韓國의 統一政策의 實効性 提高를 위한 초마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五) 統韓問題의 法的 命題 및

韓國의 統一政策의 法的 根拠

앞에서 考察하였듯이 獨逸問題와 韓半島問題는 典型的 分斷國問題로서 중요한 屬性을 共有하고는 있지만, 具體的 內容에 있어서는 서로 地地를 달리한다. 그리하여 統獨問題에서 法統과 政策的 이니셔티브를 獨占하고 있는 西獨의 立場이 法的, 政治的 機能面에서 韓國의 立場과 同一의 것으로 取扱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實際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獨逸問題의 경우 西獨은 國家(國際法上的의 國家이든 또는 獨逸內의 部分國家이든)로서의 地位認定을 要求해온 東獨의 主張을 받아들여 「兩獨基本條約」을 文書化함으로써 “全獨單一代表權 拋棄” 내지 “分斷의 永統化”를 指向하는 듯한 빌미를 남겼다.

그러나 韓半島의 경우, 치열한 對立關係에도 불구하고, 南과 北은 어느쪽도 “民族分斷의 永統”을 指向하는 어떤 法的 表現도 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서 또한 韓國은 緊張緩和를 위한 努力 以外에 北韓에 대한 不承認의 立場은 결코 拋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現實政治의 세계에서 西獨의 對外政策이 갖는 國際的 實効性은, 提起한 法的 命題의 合理性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西獨의 富強의 後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本研究에서는, 끝으로 위에서 말한 韓半島問題 特有的 屬性에 비

추어 統韓問題의 前提가 되는 法的 命題를 体系的으로 整理해 보고 다시 그러한 法的 命題에 보조를 맞춘 韓國의 統一政策이 가지고 있는 法的 根拠를 檢討해보고자 한다.

1. 全韓國의 法的 存続性은 嚴存한다.

全韓國의 法的 存続性이 嚴存한다는 事實이 최초로 確約된 것은 1943年 12月의 美·英·中 聯合國에 의한 「카이로宣言」에서이다. 同宣言에서 聯合國 代表들은 韓國의 法的 存続을 確認함으로써 大韓帝國의 法統이 日帝殖民統治로 消滅되지 않았음을 明白히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카이로宣言」의 約束은 1945年 7月의 「포츠담宣言」에서 再確認되고 있다. 이와 같은 全韓國의 法的 存続性은 國際的·集團的 次元에서도 公認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全韓國의 法的 存続性은 對立的 分斷當事者인 南·北間에 있어서도 엄숙히 確認되고 있다. 즉 1972年 7月4日의 「南北共同聲明」에 의하면, 現實的인 分斷狀態에도 不拘하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해야”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祖國統一의 原則들에 合意를 품으로써, 大韓帝國으로부터 分裂하여 個別國家로 並立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分斷狀態를 해소하여 全韓國의 行爲能力을 原狀回復시킴이 目的이라고 雙方은 確認하고 있다. 따라서 分斷當事者들에게 있어서도 大韓帝國은 계속 存続하며 또한 南北韓은 相互 外國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全韓國의 法的 存続性에 대한 韓國의 統一政

策은 具體的으로 어떠한가? 이 問題에 대한 韓國의 基本的 立場은 憲法에도 반영하고 있다. 憲法의 關係條項에 의하면 韓國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歷史的 使命”으로 삼고(前文), 그 實現을 위한 受權的 憲法機關으로 「統一主體國民會議」를 設置하고 있으며(第 35 條), 나아가서는 國會議席까지 北韓地域出身 議員數를 空席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건국 초기)

이러한 韓國의 統一政策이 안고 있는 法的 면모는 1973年 6月 23 日의 「平和統一外交宣言」에서 具體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6·23 宣言에 의하면, 韓國은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UN 加入이 未解決의 內戰狀態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暫定的 措置라고 闡明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緊張緩和를 위한 그러한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과도적 期間中의 暫定的 措置로서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하여 둔다”고 함으로써 南北分斷의 永続化를 의미하는 北韓의 國家로서의 承認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6·23 宣言의 基本的 精神은 첫째, 緊張緩和 내지 平和愛護精神 둘째, 周邊情勢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全韓國의 法的 存続性을 平和的 手段에 의해 回復하려는 民族自決主義 등으로 代表된다고 할 수 있다.

2. 全韓國의 法統의 代表權은 당연히 韓國에 歸屬된다.

주지하듯이, “唯一合法的 政府”로서의 全韓國 法統의 代表權이 單獨的으로 韓國에 부여된 것은 1948年 UN總會決議에 의한다.

따라서 韓國의 法的 單獨代表權은 世界的·普遍的 次元의 集團的, 明示的 公認形式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의 唯一法統은 앞에서 보았듯이, 西獨의 경우보다도 더욱 法的 基盤을 두텁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問題에 대한 韓國의 政策的 立場은 어떠한가?

이 問題에 대한 韓國의 立場은 「不承認主義」라는 法的 根拠에서 부터 出發한다. 勿論 이러한 韓國의 對北韓 不承認主義의 立場은 分斷된 祖國의 周辺情勢 變化에 따라 미묘한 變化를 보여왔지만 大前提인 “民族的 統一”을 拋棄하는 線은 결코 벗어나고 있지 않다. 具體적인 法的 內容이 담겨 있는 6·23宣言을 보면, 예컨대 UN同時加入이나 現實的 內戰狀態의 解決을 위한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의 暫定的 措置로서 그것은 결코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韓國의 政策的 立場은 國際法上 特別地位 (Sonderstatus) 를 要求함으로써 單獨代表權을 堅持하려는 努力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점은 또한, 西獨이 東獨에 대하여 國際法上的 承認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獨逸內의 2個의 國家의 存在를 認定함으로써 西獨政府의 國際法的 地位인 “全獨單獨代表權”을 事實上 拋棄한 것이 아닌가 하는 獨逸公法學界의 우려를 감안할 때, 좋은 對照를

이루는 點이기도 한 것이다.

3. 北韓의 國際法上 地位에 關하여

美·蘇間의 冷戰的 對立이 격화되어 있었던 동안에 있어서 韓國의 對外政策은 앞장에서 보았듯이, 「絶對的 不承認主義」로써 特徵을 잡을 수 있었다.

즉 韓國政府와 公式外交關係에 있는 第三國이 다시 北韓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은 韓半島 分斷을 深化하는 非友好的 行爲로 간주하여, 그 國家와는 一切의 關係를 단절하는 立場을 취하였다.

그러나 周邊情勢 특히 美·蘇間의 冷戰的 對立狀態가 緩和됨에 따라 實利를 外面한 「絶對的 不承認主義」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直接적으로 敵對하지 않는” 共產國家에 대하여는 門戶를 개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對共產圈國家 무차별 不承認主義의 拋棄宣言이 公式적으로 表明된 것은, 주지하듯이, 1973年 6·23 宣言 以後의 일이다. 그러나 北韓에 대한 한, 이러한 不承認主義는 조금도 變更되지 않고 있으며 또 變更될 수도 없는 것이다.

6·23 宣言에 의하면,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暫定的 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하여 둔다”고 함으로써 韓國은 北韓의 國際法的 承認을 거부하고 있다. 7·4 共同聲明, 6·23 宣言 및 1974年 1月18日의 「南北相互不可侵協定」 締結提議등에서도

韓國은 南北韓의 特別關係의 樹立을 추구할 뿐, 北韓에게 “韓國內의 國家”의 地位도 부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統一에 障得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6·23 宣言의 內容은 北韓의 現實的 存在를 考慮하긴 하지만 國家로서 承認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解釋될 수 있다. 이점은 西獨이 東獨을 “獨逸內의 一國家”로서 認定하고 있는 경우와 明白히 區別된다.

끝으로 暫定的 交涉相對로서는 北韓을 承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韓國은 北韓을 暫定的 交涉相對로서 認定하는데 있어서 2가지 전제조건을 提起하고 있다. 그 하나는 統一成就 이전에 있어서의 內亂狀態 解消를 위한 暫定的 交涉의 必要性이며 다른 하나는 北韓의 平和的 統一方式 수락이다. 前者는 6·23 宣言에서 明白히 提示되었고 後者는 1974年 1月の 「不可侵協定」締結提議를 통하여 闡明되었다.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努力을 위한 具體的 約束으로서 「相互不可侵」을 明文化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基本的 前提를 北韓이 받아들인다면 韓國은 北韓의 交涉相對로서의 法的 地位를 認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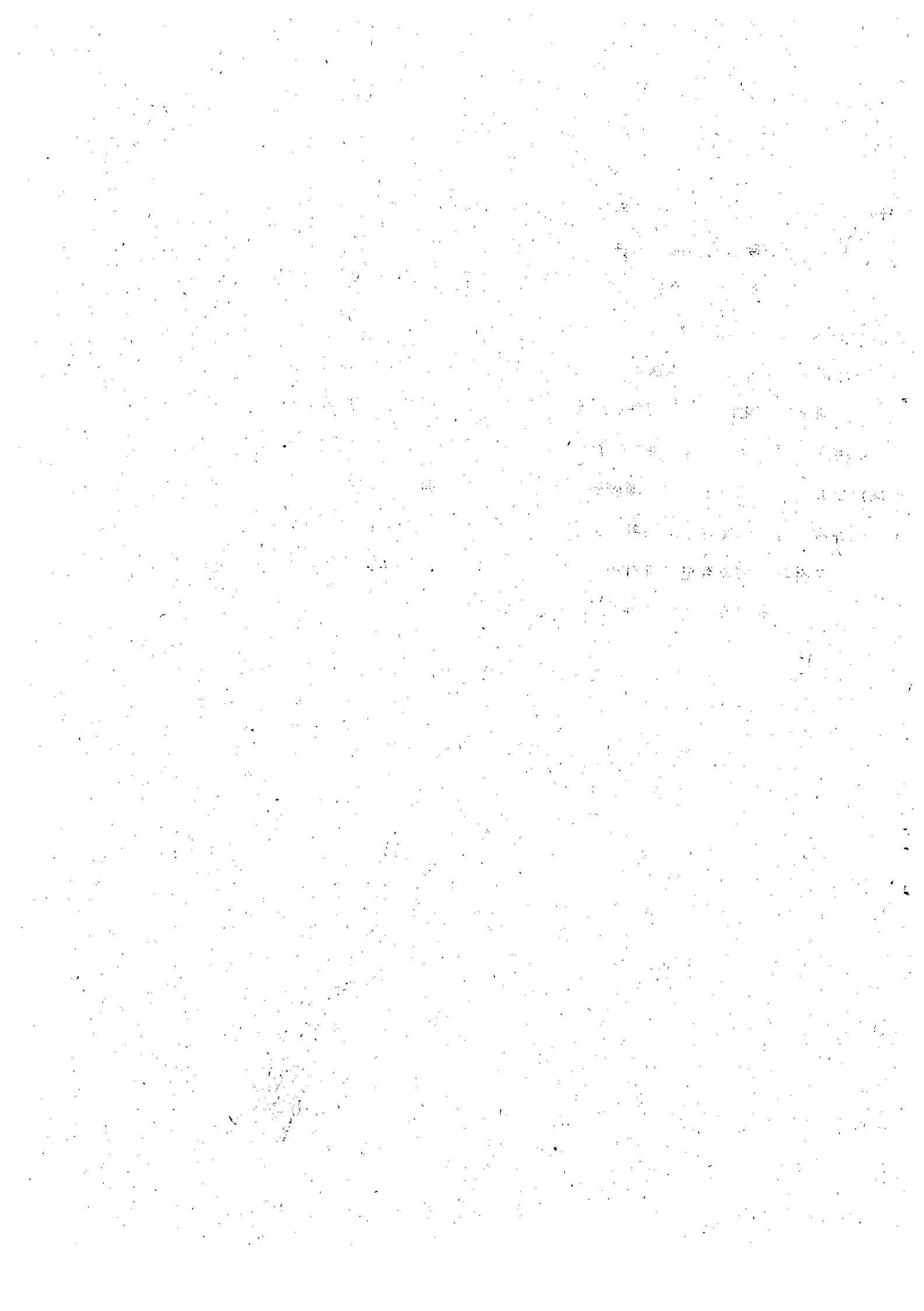
以上의 諸問題를 綜合해 볼 때, 韓國이 展開하고 있는 統一政策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부수적인 法的 命題를 內포한다고 할 수 있다.

가)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大前提下에 北韓 統治體의 地位는 暫定的으로 有効성이 認定된다.

나) 韓國이 北韓을 交渉相對로서 認定하는 것은 平和的 手段에 의한 統一接近의 前提條件을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그것은 北韓을 國際法上 國家로 承認하는 예비적 段階가 아니다.

다) 北韓의 國際法上 國家로 承認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및 第三國들이 北韓을 承認하는 것을 방지하는 努力은 全韓國의 法的 存続性을 尊重하는 行爲이지 결코 差別行爲가 아니다.

라) U N을 비롯한 主要 國際機構에 北韓이 參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民族의 再統一을 거부하는 一民族 二國家論으로서의 자동적인 해석을 유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 해석을 전제로하여 成立한다.



(六) 結論 및 對策

分断国問題는 2가지의 基本的인 概念的 特性을 갖는다. 하나는 強大国間 對立關係의 國際的 要因이며, 다른 하나는 分断体 自体의 分裂的 要因이다. 分断国問題를 하나의 “國際問題”로서 強調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勿論 前者보다 具體적으로 美·蘇와 같은 超強大国間의 對立的 關係를 核心的 要因으로 보기 마련이다. 이때 後者は 前者와의 關聯에서 意味가 있을 뿐이다. 分断国의 一般的 事例에서 中國問題가 우선 除外되며 越南問題 역시 자주 除外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分断国의 概念的 特性에서 연유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分断国의 典型的 例로는 東西獨問題와 南北韓問題가 包含될 뿐이다.

그러나 다시, 이들 典型的인 分断国도 그 背景적 조건을 면밀히 檢討해 보면, 第四章에서 보았듯이, 明白히 區別되는 概念的 特性을 갖는다. 예컨대 分断解決의 面에서 볼 때, 獨逸問題는 兩獨間의 合意的 要素보다는 關聯된 周辺強大国들간의 關係調整이 더욱 크게 制約하고 있다는 事實에 비추어, 韓國問題보다 더욱 “分断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 現實적으로 보면 獨逸問題는 멀리 NATO·바르샤바條約機構間的 均衡과 가까이 「헬싱키會談」合意事項에 의하여 關聯強大国間的 利害關係調整이 明白히 成立되어 있기 때문에 安定的 現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하여 韓半島問題는, 「七·四共同聲明」

과 같은 基礎的인 “民族的 合意”에도 不拘하고, 관련 周邊強大國 (美·日·中·蘇) 間의 勢力再編이 明確히 成立되어 있지 않기때문 에 統一을 向한 具體的 진전은 고사하고 現地의 緊張緩和作業마저 오히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바로 이점으로부터 韓半島問題가 갖고 있는 複雜한 “政治的 問題性”이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緊張緩和 努力 과 관련하여 韓國이 提示해 온 政治的 또는 法的 命題가 西獨의 그것과 처지가 同一한 경우에 있어서도, 西獨의 “攻勢的 立場”에 비하여 韓國의 “守勢的 立場”이 國際社會에서 事實化되는 듯한 事例는 바로 그러한 點과 關聯하여 解明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끝으로 이와 같은 韓國의 處地의 不利點을, 앞에서 考察한 分斷國問題의 法的 特性에 비추어, 代表的인 重要한 事項別로 選別하여 그 問題性 및 對策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韓國 統一政策의 國際法的 問題點(脆弱點)과 그 對策

(가) 分斷國問題의 一般的 問題點: 國際法上의 基本的 適法性 原則인 民族自決原則이 무시되고 있는 點.

民族自決原則은 現存하는 異質的인 諸國際法圈에 共通적으로 가장 重要한 適法性原則으로서 尊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實際的으로는 強大國間의 勢力均衡政策에 利用되어온 예가 허다하다. 分斷國問題야말로 바로 이 原則에 正面으로 反하여 成立된 代表的인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問題는, 強大國政治로서 指稱되는 現代國際政治의 뿌리 깊은 構造에서 衍유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根本的 對策을 간단한 法理論으로 포괄할 수는 勿論 없다. 그렇지만 이原則의 代表的 被害民族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英·美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國際法에서는 勿論 그것에 對立的인 蘇聯·中共의 社會主義國際法에서도 중요한 法原則으로 尊重되고 있다는 事實과, 그리고 오늘날 國際的 “表決場”에서 “多數의 壓力”을 행사하고 있는 非同盟圈의 新生諸國의 代表的인 法的 무기가 바로 이原則이라는 事實이 그것이다.

友邦인 美·日을 包含한 中·蘇와의 關係에서 韓國의 統一政策을 이原則과 적절히 결부시켜 戰略的 手段으로 活用한다면 그들과의 外交的 關係에서는 勿論 非同盟圈의 지지를 獲得하는 데에도 부분적인 實効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對外宣傳武器중에서도 바로 이原則과 關聯하여 實効를 거두고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나) 獨逸問題와의 比較에서 抽出되는 問題點: 國家로서의 法的 繼統性(存統性)을 欠如하고 있다는 點

分斷國問題에 관한 獨逸學者들의 法理論에 의하면, 獨逸은 分斷直前의 源泉國家인 第三帝國의 繼統的인 法統이 「포츠담宣言」에 의하여 明示적으로 認定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美·英·仏 三國

의 「런던宣言」에 의하여 西獨에게 公認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理論에 따르면 韓國의 경우나 越南의 경우는, 分斷直前の 源泉國家가 없기 때문에 (日本植民地, 仏植民地) 國家로서의 法統의 繼續性이 결여된다는 論理를 이 끌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問題는 問題거리가 될 수 없다. 1943年의 「카이로宣言」에서 美·英·中 聯合國代表는 “韓國은……自由와 獨立이 될 것이다”라고 規定함으로써 韓國을 現存하는 國際法主体로서 明示하였다.

따라서 大韓帝國의 法統은 消滅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自由와 自主라는 國際法的 行爲能力을 방해받고 있었을 뿐이라는 事實이다. 그리고 이 「카이로宣言」은 1945年의 「포츠담宣言」에서 再確認되었던 것이다. 또 大韓帝國의 法統은 UN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西獨의 경우보다 더욱 普遍的 次元에서, 韓國에게 公認되었던 것이다.

(가) 北韓에 대한 韓國의 法的 姿勢와 關聯하여 惹起되는 問題點:
北韓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無責任한 不承認主義의 高집이 아닌가 하는 點

이 問題는 두가지 側面에서 檢討될 必要가 있다. 첫째는 北韓을 國際法上 國家로 承認하는 경우, 거기에서 생기는 法的 結果는 單一國家로서의 民族的 再統一의 前提를 拋棄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이미 「七·四共同聲明」에서 南과 北이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明

示的으로 合意하고 있는 만큼 問題가 될 수 없다. 問題는 두 번째로서, 南北間의 統一課題 接近과 緊張緩和를 위해서 우선 國際法的 交涉相對로서의 北韓統治体の 合法性에 대한 承認의 問題이다.

西獨은 對東獨關係에서 이 問題를 明白히 解決하였기 때문이다. 이 問題에 대한 法理論的 對策은 다음과 같이 展開할 수 있다. 6·23 宣言에서 明示한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暫定的 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承認의 거부는, 앞에서 인용한 「七·四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반영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브란트의 東方政策의 경우와도 일치한다. 韓國이 北韓의 統一治體에 대한 合法性을 承認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중요한 前提條件이 있는 것이다. 이 條件은 1974年 1月18日의 「南北相互不可侵犯定」締結 條約에서 明白히 提示되고 있는 國際法의 基本的 原則이기도 하다. 그것은 國際法(社會主義國際法 包含)의 基本的 原則에 反하는 “侵略” “武力使用” 등의 行爲를 拋棄한다는 約束을 明示的으로 하는 前提下에서 韓國政府는 北韓統治體를 國際法上 交涉相對로서의 合法性을 認定할 用意가 있다는 提議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政府의 北韓統治體에 대한 不承認은 無責任한 不承認主義의 高수로서 비난될 根拠가 없는 것이다.

(타) 綜合的 考慮에서 추론되는 問題點: 統一政策의 客觀的 实效性 提高를 위한 獨自的인 戰略的 政策手段을 欠如하고 있다는 點.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政府”로서의 國際法的 正統성은, 北韓과 의 대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西獨의 경우에 비해서 보더라도 월등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西獨이 美·英·仏 三國의 「런던宣言」을 통한 地域的 次元에서 “唯一合法性”을 認定받는데 비하여 韓國은 UN決議라는 世界的·普遍的 次元에서 集團的·明示적으로 法統의 公認을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對外政策이 國際社會에서 “守勢”에 물리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問題와 關聯하여 생각될 수 있는 모든 “問題性”은 韓國이 統一政策의 客觀化를 위하여 使用할 만한 獨自의 手段을 아직 開發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에 귀착된다. 西獨의 경우, Hallstein原則을 明示적으로 拋棄宣言을 한 以後에 있어서도 實際的 對外關係에서는 繼續적으로 Hallstein原則의 實効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은 西獨의 經濟力을 감안한 關係國家들의 自發的 協助의 結果였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非同盟圈 諸國은 勿論 東歐共產圈諸國도 例外가 아니었다. 이와는 對照적으로 韓國의 對外政策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法的 및 人道的 正當性에도 不拘하고 國際社會에서 歪曲되어 나타났던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韓國이 關係國家들에게 直接 壓力을 加할 獨自의 手段이 미약했던 結果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러한 獨自의 手段의 欠如때문에 主要 政策的 戰略을 美·日과 같은 友邦에 依賴하게 된 結果 그 逆反應의 피해를 받은 結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非同盟圈諸國에 대한 關係의 경우, 韓國에 不利한 그들의 動向은 韓國 自体에 대한 거부현상이라기 보다는 美國·日本등과 같은 “帝國主義的” 強大國에 대한 反撥로서 分析·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리마」外交가 韓國政府의 独自の 시도였다고는 하지만(金外務발언), 非同盟諸國의 韓國에 대한 先入見은 쉽게 지워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非同盟圈에 대한 韓國의 当面外交의 要請에 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長期的인 統一政策의 实效性을 높이기 위해서도, 韓國은 独自の인 戰略手段의 開發을 통하여 對美·對日依存 인상을 불식하는 努力이 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獨自의 手段에는 經濟力의 增大와 自主國防態勢의 完備등 單시일내에 開發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이 包含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先建設, 後統一”의 統一哲學을 提示한 朴大統領의 「비전」은 단순한 政策的 「슬로건」 이상의 論拠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經濟力의 提高와 自主國防力의 完備를 통한 国力의 充實化가 없이는 아무리 正當한 政策도 소기의 实效性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問題 역시 適法性原則보다는 实效性原則이 支配하는 現代的 國際法秩序의 基本構造와 直結되는 問題인 것이다.

